

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국	가	보	훈	부
금	용	위	원	회

2024. 11

정무위원회

목 차

I .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1
II . 심사경과	2
III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및 증감내역	4
IV . 전문위원 검토보고: <붙임> 참조	54
V . 대체토론의 요지	54
VI .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55
VII . 찬반토론의 요지	56
VIII . 심사결과	56
IX . 소수의견의 요지	57
X . 부대의견	57
※ 첨부: 2023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64
※ 붙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80

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 11.
정무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1. 국가보훈부 소관

가. 보훈기금 : 수입 및 지출

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수입 및 지출

2. 금융위원회 소관

가. 신용보증기금 : 수입 및 지출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수입 및 지출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수입 및 지출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 수입 및 지출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수입 및 지출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수입 및 지출

Ⅱ.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 2024년 9월 2일

2. 회부일자 : 2022년 9월 3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국가보훈부 소관

○ 제418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2024. 11. 12.)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4.)

(상정 · 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5.)

(상정 · 심사)

–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8.)

(상정 · 심사)

–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9.)

(상정 · 심사)

• 제8차 정무위원회(2024. 11. 19.)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나. 금융위원회 소관

○ 제418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2024. 11. 12.)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4.)

(상정 · 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5.)

(상정 · 심사)

-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8.)

(상정 · 심사)

-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9.)

(상정 · 심사)

- 제8차 정무위원회(2024. 11. 19.)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Ⅲ.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및 증감내역

【 국가보훈부 소관 】

1. 보훈기금

1) 수입 운용계획안

- 2025년도 보훈기금 수입 운용계획안은 2024년 대비 15.9% 증가한 6,961억 6,800만원이 편성됨.
- 자체수입은 대부원리금, 예탁이자수입, 골프장 운영수입 등으로 2024년 대비 1.8% 증가한 1,969억 3,000만원임.
- 정부내부수입은 복권기금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원금회수 등으로 2024년 대비 18.3% 감소한 1,451억 2,700만원임.
- 여유자금회수는 사업비 지출을 위한 회수금으로 2024년 대비 54.4% 증가한 3,541억 1,100만원임.

< 2025년도 보훈기금 수입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600,414	696,168	95,754	△15.9
○ 자체수입	193,414	196,930	3,516	1.8
- 재산수입	126,462	136,119	9,657	7.6
(골프장 매각대금)	(122,700)	(132,000)	(9,300)	(7.6)
- 경상이전수입	7,177	1,016	△6,161	△85.8
- 골프장운영수입	34,399	35,080	681	2.0
- 용자원금회수	25,376	24,715	△661	△2.6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정부내부수입	177,680	145,127	△32,553	△18.3
- 복권기금전입금	22,076	21,553	△523	△2.4
- 기금예탁이자수입	150,000	120,000	△30,000	△20.0
- 기금예탁원금회수	5,604	3,574	△2,030	△36.2
○ 여유자금회수	229,320	354,111	124,791	54.4

2) 지출 운용계획안

- 2025년도 보훈기금 지출 운용계획안은 2024년 대비 15.9% 증가한 6,961억 6,800만원이 편성됨.
- 사업비는 노후복지지원 근로자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24년 대비 7.1% 감소한 1,160억 2,000만원임.
- 기금운영비는 기금 사업을 위한 경비로 2024년 대비 0.6% 증가한 8억 4,400만원임.
- 정부내부지출은 타 기금 전출금으로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축소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4.9% 감소한 905억 4,600만원임.
- 여유자금운용은 사업비 집행 후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월에 예탁하는 것으로 2024년 대비 38.0% 증가한 4,887억 5,800만원임.

< 2025년도 보훈기금 지출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 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600,414	696,168	95,754	15.9
○ 사업비	124,887	116,020	△8,867	△7.1
-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1,320	1,320	-	-
- 중상이자보조기기지급	3,294	2,228	△1,066	△32.4
-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43,047	39,771	△3,276	△7.6
- 기타복지지원	476	-	△476	순감
- 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램	617	875	258	41.8
- 보훈트라우마센터설치운영	2,110	1,451	△659	△31.2
- 보훈복지시설건립	3,365	3,783	418	12.4
- 보훈요양및양로지원	7,694	8,372	678	8.8
- 보훈휴양원건립	100	-	△100	순감
- 장학금	438	438	-	-
- 국가유공자등대부(용자)	22,679	22,679	-	-
- 국가유공자등대부관리	10,657	10,657	-	-
- 골프장위탁운영	17,333	17,643	310	1.8
- 골프장시설투자	3,197	4,077	880	27.5
- 재향군인회지원	6,061	-	△6,061	순감
- 참전기념사업지원	456	687	231	50.7
- 제대군인대부(용자)	1,755	1,751	△4	△0.2
- 제대군인대부관리	288	288	-	-
○ 기금운영비	839	844	5	0.6
- 인건비	220	228	8	3.6
- 기금운영비	619	616	△3	△0.5
○ 정부내부지출	120,577	90,546	△30,031	△24.9
- 공무원연금기금전출	14	74	60	428.6
- 복권기금전출	563	472	△91	△16.2
- 공자기금예탁금	120,000	90,000	△30,000	△25.0
○ 여유자금운용	354,111	488,758	134,647	38.0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 수입 운용계획안

- 2025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대비 0.3% 증가한 1,492억 1,300만원이 편성됨.
- 자체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광복회관 임대료 등으로 친일귀속재산 매각 추이, 광복회관 임대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4.0% 증가한 87억 5,100만원임.
-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4년 대비 0.1% 감소한 925억 8,300만원임.
- 여유자금회수는 연기금투자폴 사업비 회수금으로 2024년 대비 0.4% 증가한 478억 7,900만원임.

< 2025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 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48,730	149,213	483	0.3
○ 자체수입	8,414	8,751	337	4.0
- 토지대여료	61	67	6	9.8
- 건물대여료	3,703	3,703	-	-
- 기타재산이자수입	1,737	1,737	-	-
- 변상금	-	39	39	순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120	133	13	10.8
- 토지매각대	2,793	3,072	279	10.0
○ 정부내부수입	92,651	92,583	△68	△0.1
- 일반회계 전입금	92,651	92,583	△68	△0.1
○ 여유자금회수	47,665	47,879	214	0.4

2) 지출 운용계획안

- 2025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 운용계획안은 2024년 대비 0.3% 증가한 1,492억 1,300만원이 편성됨.
- 사업비는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감액 및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 증액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0.3% 증가한 1,010억 1,100만원임.
- 기금운영비는 2024년과 동일한 9,400만원임.
- 여유자금운용은 사업비 지출규모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0.5% 증가한 481억 800만원임.

< 2025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48,730	149,213	483	0.3
○ 사업비	100,757	101,011	254	0.3
-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97,065	96,997	-	-
-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	267	589	322	120.6
- 독립유공자묘소관리	398	398	-	-
- 광복회관관리	3,027	3,027	-	-
○ 기금운영비	94	94	-	-
- 인건비	48	50	2	4.2
- 사업운영비	46	44	△2	△4.3
○ 여유자금운용	47,879	48,108	229	0.5

【 금융위원회 소관 】

1. 신용보증기금

1) 수입계획안

-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11조 9,507억 5,900만원으로 2024년 수정계획 대비 4,804억 8,400만원(4.2%) 증액 편성됨.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10,465,063	11,470,275	11,470,275	11,950,759	480,484	4.2
□ 재산수입	242,632	223,370	223,370	181,828	△41,542	△18.6
□ 경상이전수입	2,002,014	1,972,300	1,972,300	2,227,484	255,184	12.9
□ 채화 및 용역판매수입	913,807	1,172,303	1,172,303	980,618	△191,685	△16.4
□ 관유물매각대	64	7	7	3,255	3,248	46,400.0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6,971,548	8,022,295	8,022,295	8,517,574	495,279	6.2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34,998	80,000	80,000	40,000	△40,000	△50.0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 투자 배당금, 건물대여료 등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치금 및 유가증권 이자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15억 4,200만원(18.6%) 감소한 1,818억 2,800만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구상권 회수, 공탁금 반환, 매출 채권 상환 수입, 새출발기금 채권매각대금 등으로, 출연대상 대출금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 팩토링금융 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채권 상환 수입 증가 및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551억 8,400만원(12.9%) 증가한 2조 2,274억 8,4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신용보증료, 수수료, 위탁보증부담금, 고정 자산 매각 이익 등으로, 대환보증 신규 공급 종료에 따른 보증료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16억 8,500만원(16.4%) 감소한 9,806억 1,800만원이 편성됨.
- ‘관유물매각대’는 고정자산 매각 수입, 무형자산 매각 수입 등으로 업무용 건물 및 토지 매각 수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억 4,800만원 (46,400%) 증가한 32억 5,5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국공채매각대,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등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여유자금 만기도래 규모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952억 7,900만원(6.2%) 증가한 8조 5,175억 7,4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정부출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관련 수입으로, 정부출연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00억원(50.0%) 감소한 400억원이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11조 9,507억 5,900만원으로 2024년 수정계획 대비 4,804억 8,400만원(4.2%) 증액 편성됨.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10,465,063	11,470,275	11,470,275	11,950,759	480,484	4.2
□ 사업비	2,703,024	4,116,079	4,116,079	4,850,144	734,065	17.8
○ 신보대위변제	2,287,255	3,565,457	3,565,457	4,303,979	738,522	20.7
○ 기타사업비	415,769	550,622	550,622	546,165	△4,457	△0.8
□ 기금운영비	407,820	367,551	367,703	374,229	6,526	1.8
○ 인건비	265,840	275,035	275,035	285,770	10,735	3.9
○ 기타운영비	141,980	92,516	92,668	88,459	△4,209	△4.5
□ 여유자금운용	7,354,219	6,986,645	6,986,493	6,726,386	△260,107	△3.7

(자료: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비 계획안은 4조 8,501억 4,400만원으로 대위변제 증가 및 팩토링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2024년도 계획 대비 7,340억 6,500만원(17.8%)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742억 2,900만원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24년도 계획 대비 65억 2,600만원(1.8%) 증가함.
- 2025년도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6조 7,263억 8,600만원으로 2024년도 계획 대비 2,601억 700만원(3.7%) 감소함.
-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

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성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신용보증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 원, %)

프로그램명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신용보증금융지원(2400)	23,877	25,441	28,746	28,997	31,899	33,240
기금운영비(3300)	3,544	3,557	3,604	3,604	3,695	3,770
기금간거래(예탁금)(9000)	-	2,500	-	-	-	-
여유자금운용(9700)	49,006	75,508	63,512	64,067	85,287	92,871
합 계	76,427	107,006	95,862	96,668	120,881	129,881
프로그램명	2023년		2024년		2025년도 계획안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신용보증금융지원(2400)	36,935	37,351	41,161	41,161	48,502	
기금운영비(3300)	3,700	4,134	3,676	3,677	3,742	
기금간거래(예탁금)(9000)	-	-	-	-	-	
여유자금운용(9700)	82,652	81,802	69,866	69,865	67,264	
합 계	123,287	123,287	114,703	114,703	119,508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4조 8,501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40억 6,500만원(17.8%)이 증가됨.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 계획 대비 일반보증 대위변제 2,867억 8,200만원(12.2%), 대환보증 대위변제 4,594억 8,500만원(180.6%), 팩토링 금융 501억 1,100만원(33.4%)이 증액 편성되고, 신규사업으로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1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2,075억 2,800만원(37.4%), 보증료환급 352억 7,300만원(26.8%), 이차보전 지원 310억 4,200만원(69.1%)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2,703,024	4,116,079	4,116,079	4,850,144	734,065	17.8
○ 신보대위변제	2,287,255	3,565,457	3,565,457	4,303,979	738,522	20.7
- 일반보증 대위변제	1,720,522	2,358,443	2,358,443	2,645,225	286,782	12.2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34,590	397,104	397,104	596,887	199,783	50.3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507,355	555,474	555,474	347,946	△207,528	△37.4
- 대환보증 대위변제	24,788	254,436	254,436	713,921	459,485	180.6
○ 기타사업비	415,769	550,622	550,622	546,165	△4,457	△0.8
- 보증료환급	95,873	131,650	131,650	96,377	△35,273	△26.8
- 구상권관리	60,107	99,462	99,462	99,462	-	-
- 업무용건물	4,707	11,900	11,900	14,294	2,394	20.1
- 경영지도	15,952	18,710	18,710	20,252	1,542	8.2
- 보증연계투자	66,578	67,540	67,540	67,540	-	-
- 미래성장성평가	1,922	2,335	2,335	6,335	4,000	171.3
- 프론트윈운영	5,569	6,720	6,720	7,060	340	5.1
- 이차보전지원	56,802	44,893	44,893	13,851	△31,042	△69.1
- 팩토링금융	89,980	150,049	150,049	200,160	50,111	33.4
- 신용정보(정보화)	2,301	1,364	1,364	2,034	670	49.1
-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	-	-	1,294	1,294	순증
- 신보IT운영(정보화)	15,978	15,999	15,999	17,506	1,507	9.4

(자료: 금융위원회)

- ‘일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부실률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867억 8,200만원(12.2%) 증가한 2조 6,452억 2,500만원이 편성됨.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기부실금액 및 부실발생 예상금액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997억 8,300만원(50.3%) 증가한 5,968억 8,700만원이 편성됨.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보증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075억 2,800만원(37.4%) 감소한 3,479억 4,600만원이 편성됨.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부실발생 예상금액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594억 8,500만원(180.6%) 증가한 7,139억 2,100만원이 편성됨.

- ‘보증료환급’ 사업은 보증기간 중 선취한 보증료를 중도해지 시 환급하여 주는 의무적 지출로, 보증해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52억 7,300만원(26.8%) 감소한 963억 7,700만원이 편성됨.
- ‘구상권관리’ 사업은 부실발생기업 및 대위변제기업 등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소송, 채권회수활동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전년 수준과 동일한 994억 6,200만원이 편성됨.
- ‘업무용건물’ 사업은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지점 건물 수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3억 9,400만원(20.1%) 증가한 142억 9,400만원이 편성됨.
- ‘경영지도’ 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창업종합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억 4,200만원(8.2%) 증가한 202억 5,200만원이 편성됨.
- ‘보증연계투자’ 사업은 미래가치 및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민간으로부터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혁신형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사업으로서 전년 수준과 동일한 675억 4,000만원이 편성됨.
- ‘미래성장성평가’ 사업은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가능성을 결합한 미래성장성평가 체계 등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미래성장성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출장비 및 연구용역비 이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서 원활한 평가 수행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40억원(171.3%) 증가한 63억 3,500만원이 편성됨.

- ‘프론트윈운영’ 사업은 전문 창업 보육공간인 프론트윈 건물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억 4,000만원(5.1%) 증가한 70억 6,000만원이 편성됨.
-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대상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지원이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310억 4,200만원(69.1%) 감소한 138억 5,100만원이 편성됨.
- ‘팩토링금융’ 사업은 구매기업의 신용거래위험 확산 방지를 위해 판매 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사업으로, 팩토링 공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01억 1,100만원(33.4%) 증가한 2,001억 6,000만원이 편성됨.
- ‘신용정보(정보화)’ 사업은 중소기업의 데이터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개방 데이터의 최신화 등을 위해 전년 대비 6억 7,000만원(49.1%) 증가한 20억 3,400만원이 편성됨.
-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사업은 국내·외 연구 및 제도 전파 등을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보형 금융교육 수행을 통해 금융소비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12억 9,400만원이 편성됨.
- ‘신보IT운영(정보화)’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억 700만원(9.4%) 증가한 175억 6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742억 2,900만원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5억 2,600만원(1.8%) 증가함.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407,820	367,551	367,703	374,229	6,526	1.8
○ 인건비	265,840	275,035	275,035	285,770	10,735	3.9
○ 기타운영비	141,980	92,516	92,668	88,459	△4,209	△4.5
- 기금관리비	122,462	92,516	92,668	88,459	△4,209	△4.5
- 선급법인세	19,518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7억 3,500만원(3.9%) 증가한 2,857억 7,0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전년 대비 42억 900만원(4.5%) 감소한 884억 5,900만원이 편성됨.

(4)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총수입액 중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투자상품, 국채, 금융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601억 700만원(3.7%) 감소한 6조 7,263억 8,6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7,354,219	6,986,645	6,986,493	6,726,386	△260,107	△3.7
○ 정기예금	1,945,640	2,995,669	2,995,517	2,438,062	△557,455	△18.6
○ 연기금투자풀	3,780,000	2,926,910	2,926,910	3,506,872	579,962	19.8
○ 국채	846,998	401,980	401,980	306,738	△95,242	△23.7
○ 국채외채권(금융채 등)	606,638	488,683	488,683	343,255	△145,428	△29.8
○ 기타유가증권	174,943	173,403	173,403	131,459	△41,944	△24.2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0	2021	2022	2023	2024.9.	2025(전망)
☐ 예치금	1.75	1.27	2.16	3.89	4.31	3.84
☐ 채권	2.34	△0.15	△1.86	6.38	4.81	3.47
☐ 수익증권	3.96	0.17	△4.38	8.15	6.61	4.03
계	2.61	0.63	△0.63	6.04	5.58	3.90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 계획

- 2025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일반보증 61.3조원, 소상공인 위탁보증 0.3조원, 대환보증 8.6조원, 유동화회사보증 12.9조원 등 83.1조원 규모로 운용할 예정임. 이는 2024년 대비 3조 9,136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22.1월 신규 공급 종료된 소상공인 위탁보증 해지 증가와 코로나 19 및 복합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보증규모의 점진적 정상화 등을 감안한 것임.
- 2025년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2024년 계획(전망치) 대비 1조 620억원 감소한 10조 589억원 수준으로 운용배수는 8.3배로 예상됨.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보증공급	669,483	732,726	743,243	653,403	△89,840	△12.1
□ 보증잔액	816,227	862,663	870,169	831,033	△39,136	△4.5
□ 기본재산	117,227	90,983	111,209	100,589	△10,620	△9.5
□ 운용배수	7.0	9.5	7.8	8.3	0.5	6.4

주: 총보증 기준

<최근 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 보증공급	470,550	490,878	653,758	652,866	646,493	669,483
□ 보증잔액	505,317	522,161	671,531	785,888	833,689	816,227
□ 기본재산	50,909	53,377	81,922	88,791	105,482	117,227
□ 운용배수	9.9	9.8	8.2	8.9	7.9	7.0

주: 총보증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 수입계획안

-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4조 8,091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0억 2,700만원(△1.8%)이 감액 편성됨.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4,825,263	4,897,189	4,897,189	4,809,162	△88,027	△1.8
□ 재산수입	144,570	180,300	180,300	200,554	20,254	11.2
□ 경상이전수입	1,333,439	1,353,971	1,353,971	1,508,989	155,018	11.4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15,724	386,932	386,932	408,276	21,344	5.5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498,573	2,975,986	2,975,986	2,691,343	△284,643	△9.6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32,957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유자금 운용규모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2억 5,400만원(11.2%) 증가한 2,006억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구상권 회수, 공탁금 반환 등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연금 잔액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 수입 증가와 구상권 회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50억 1,800만원(11.4%) 증가한 1조 5,089억 8,9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신용보증료 수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공급규모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3억 4,400만원(5.5%) 증가한 4,082억 7,6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국채,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및 통화 금융기관예치금 회수 등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만기 도래되는 여유자금 회수금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846억 4,300만원(△9.6%) 감소한 2조 9,759억 8,6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회수 및 예탁이자수입으로, 2025년도는 예탁 및 회수계획 이 없음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4조 8,091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0억 2,700만원(△1.8%)이 감액 편성됨.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4,825,263	4,897,189	4,897,189	4,809,162	△88,027	△1.8
□ 사업비	699,594	781,432	1,016,859	1,548,198	531,339	52.3
○ 대위변제	635,639	700,850	926,435	1,425,214	498,779	53.8
○ 기타사업비	63,955	80,582	90,424	122,984	32,560	36.0
□ 기금운영비	72,838	57,905	58,812	59,637	825	1.4
○ 인건비	41,975	44,455	44,455	46,562	2,107	4.7
○ 기타운영비	30,863	13,450	4,357	13,075	△1,282	△8.9
□ 정부내부지출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	-	-	-
○ 일반회계전출	-	-	-	-	-	-
□ 여유자금운용	4,052,831	4,057,852	3,821,518	3,201,327	△620,191	△16.2

(자료: 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사업비 계획안은 1조 5,481억 9,800만원으로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대위변제 증가추세 등을 반영하여 2024년도 수정 계획 대비 5,313억 3,900만원(52.3%) 증가함.
-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596억 3,700만원으로 예산절감 노력 등의 감액 요소도 반영되었으나, 인건비의 증원 및 인상률 반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억 2,500만원(1.4%) 증가함.

- 2025년도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3조 2,013억 2,700만원으로 사업비 지출규모 증가 및 2025년도 만기도래 여유자금 회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201억 9,100만원(△16.2%) 감소함.

- 최근 5년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 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내부거래·보전거래 성격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 원, %)

프로그램명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주택금융지원(2600)	3,176	3,348	3,766	3,766	4,023	4,311
기금운영비(3400)	726	828	626	881	633	66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8500)	5,000	5,300	-	-	-	-
일반회계전출금(8900)	3,000	8,000	2,000	2,000	2,320	2,320
여유자금운용(9700)	53,858	48,286	38,565	38,310	35,124	34,809
합 계	65,760	65,762	44,957	44,957	42,100	42,100
프로그램명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획안	
주택금융지원(2600)	3,959	7,213	7,814	10,169	15,482	
기금운영비(3400)	638	753	579	588	597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8500)	-	-	-	-	-	
일반회계전출금(8900)	-	-	-	-	-	
여유자금운용(9700)	44,327	40,958	40,579	38,215	32,013	
합 계	48,924	48,924	48,972	48,972	48,092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1조 5,481억 9,800만원으로 2024년 수정 계획 대비 5,313억 3,900만원(52.3%) 증액됨.

○ 2025년도 사업비 계획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대위변제 4,987억 7,900만원(53.8%), 보증료환급 21억 7,800만원(6.7%), 구상권관리 106억 4,500만원(33.0%), 사업수수료 28억 8,000만원(20.6%), 담보설정비용 194억 5,000만원(614.0%)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신보IT운영 25억 9,300만원(△31.4%)이 감액 편성됨.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699,594	781,432	1,016,859	1,548,198	531,339	52.3
○ 주신보운영	693,571	774,955	1,008,603	1,542,535	533,932	52.9
- 대위변제	635,639	700,850	926,435	1,425,214	498,779	53.8
- 보증료환급	23,268	28,657	32,715	34,893	2,178	6.7
- 구상권관리	21,223	24,277	32,274	42,919	10,645	33.0
- 사업수수료	11,017	18,003	14,011	16,891	2,880	20.6
- 담보설정비용	2,424	3,168	3,168	22,618	19,450	614.0
○ 주신보 IT운영(정보화)	6,023	6,477	8,256	5,663	△2,593	△31.4

(자료: 금융위원회)

○ ‘대위변제’ 사업은 보증이용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금융기관에 직접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지출 항목으로, 주택신용보증 및 주택연금보증의 대위변제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987억 7,900만원(53.8%) 증가한 1조 4,252억 1,400만원으로 편성됨.

- ‘보증료환급’ 사업은 보증기간 중 중도해지 시 선취한 보증료를 환급하여 주는 지출 항목으로, 보증료환급이 잦은 구입자금보증 공급확대 및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추세에 따른 환급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억 7,800만원(6.7%) 증가한 348억 9,300만원이 편성됨.
- ‘구상권관리’ 사업은 부실 및 대위변제가 발생한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소송, 채권회수활동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구상권 관리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06억 4,500만원 (33.0%) 증가한 429억 1,900만원이 편성됨.
- ‘사업수수료’ 사업은 보증 취급관련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취급수수료 및 기타 보증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지출 항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급 증가 및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억 8,000만원이 증가(20.6%)한 168억 9,100만원이 편성됨.
- ‘담보설정비용’ 사업은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설정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및 제반비용을 납부하기 위한 지출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주택연금 가입주택 담보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이 2024년말 일몰되는 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94억 5,000만원(614.0%)이 증가한 226억 1,800만원이 편성됨.
- ‘주신보 IT운영(정보화)’ 사업은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대비 25억 9,300만원(△31.4%) 감소한 56억 6,3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596억 3,700만원으로 예산절감 노력 등의 감액 요소도 반영되었으나, 인건비의 증원 및 인상률 반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억 2,500만원(1.4%) 증액 편성됨.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72,838	57,905	58,812	59,637	825	1.4
○ 인건비	41,975	44,455	44,455	46,562	2,107	4.7
○ 기타운영비	30,863	13,450	14,357	13,075	△1,282	△8.9
- 기금관리비	13,926	13,450	13,450	13,075	△375	△2.8
- 법인세	16,937	-	907	-	△907	△100.0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정부지침에 의한 공통 처우개선 및 증원인력(2025년 9명)의 6개월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억 700만원(4.7%) 증가한 465억 6,2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예산절감 노력으로 전년 대비 3억 7,500만원(△2.8%) 감소한 130억 7,500만원이 편성됨.
- ‘법인세’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법인세에 대한 예산편성 및 결산절차 변경으로 2025년도 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아 전년 대비 9억 700만원 (100.0%) 감소됨.

(4) 정부내부지출

- ☐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은 없으며, 전년과 동일함.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정부내부지출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	-	-	-
○ 일반회계전출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기금 여유재원의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의 경우 예탁계획 없음.
- ‘일반회계전출’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 여유재원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의 경우 전출계획 없음.

(5) 여유자금운용

- ☐ 여유자금운용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 투자상품, 국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사업비 지출 규모 증가 및 2025년 만기도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201억 9,100만원(16.2%) 감액된 3조 2,013억 2,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4,052,831	4,057,852	3,821,518	3,201,327	△620,191	△16.2

(자료: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0	2021	2022	2023	2024.9
☐ 예치금	1.77	1.33	2.16	4.18	3.12
☐ 채권	2.18	△0.28	△1.13	6.39	3.61
☐ 수익증권	8.53	3.16	△5.11	9.97	5.65
계	4.46	1.68	△2.58	7.97	4.75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 계획

□ 주택신용보증계정

- 2025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계정(이하 “주신보계정”)의 보증공급은 최근 공급실적 추이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년 계획대비 4조 1,300억원(5.8%) 증가한 75조 3,300억원, 보증잔액은 전년 계획대비 6조 5,036억원(4.8%) 증가한 142조 2,927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5년 주신보계정의 기본재산은 전년 계획 대비 3,902억원(3.8%) 증가한 10조 7,654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운용배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을 계획하였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2025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계정”)의 보증공급은 최근 공급실적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년 계획대비 6,300억원(Δ 2.5%) 감소한 24조 8,700억원, 연금지급잔액은 전년 계획대비 2조 4,967억원(20.6%) 증가한 14조 5,915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5년 주연보계정의 기본재산은 전년 계획 대비 2,318억원(18.9%) 증가한 1조 4,59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운용배수는 전년 대비 0.1배 증가한 10.0배에 이를 것을 계획하였음.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주택신용보증계정						
○ 보증공급	755,260	712,000	712,000	753,300	41,300	5.8
○ 보증잔액(A)	1,308,230	1,357,891	1,357,891	1,422,927	65,036	4.8
○ 기본재산(B)	100,176	103,752	103,752	107,654	3,902	3.8
○ 운용배수(A/B)*	12.6	12.4	12.4	12.4	-	-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보증공급	225,016	255,000	255,000	248,700	△6,300	△2.5
○ 연금지급액	23,856	29,207	29,207	33,072	3,865	13.2
○ 연금지급잔액(C)	98,466	120,948	120,948	145,915	24,967	20.6
○ 기본재산(D)	10,205	12,275	12,275	14,593	2,318	18.9
○ 운용배수(C/D)	9.6	9.9	9.9	10.0	0.1	1.0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세보증과 반환보증의 중복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 주택신용보증계정						
○ 보증공급	454,692	545,778	646,593	650,943	729,907	755,260
○ 보증잔액(A)	775,180	898,511	1,057,518	1,169,990	1,236,335	1,308,230
○ 기본재산(B)	71,125	81,695	79,175	86,654	88,993	100,176
○ 운용배수(A/B)*	10.9	11.0	13.3	13.4	13.7	12.6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보증공급	98,991	113,325	111,028	150,255	249,692	225,016
○ 연금지급액	8,966	10,973	12,105	14,547	19,242	23,856
○ 연금지급잔액(C)	34,286	43,407	52,484	62,811	78,860	98,466
○ 기본재산(D)	2,312	2,889	4,524	6,495	7,844	10,205
○ 운용배수(C/D)	14.8	15.0	11.6	9.7	10.1	9.6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세보증과 반환보증의 중복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자료: 금융위원회)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수입계획안

-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2조 2,651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54억 7,800만원(12.2%)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1,486,546	2,019,636	2,019,636	2,265,114	245,478	12.2
□ 재산수입	35,140	64,892	64,892	44,895	△19,997	△30.8
□ 경상이전수입	295,408	391,458	391,458	358,429	△33,029	△8.4
□ 채화 및 용역판매수입	68,217	96,286	96,286	74,417	△21,869	△22.7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087,781	1,437,000	1,437,000	1,637,373	200,373	13.9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	30,000	30,000	150,000	120,000	400.0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199억 9,700만원(△30.8%) 감소한 448억 9,500만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 출연금, 구상권 회수금 등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2,412억 3,100만원), 구상 채권 회수금 감소(1,062억 2,400만원)로 전년대비 330억 2,900만원 (△8.4%) 감소한 3,584억 2,9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보증료 수입 및 수수료, 매각채권 잔여 이익금 등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대비 218억 6,900만원(△22.7%) 감소한 744억 1,700만원으로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등 여유 자금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만기 도래하는 예치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03억 7,300만원(13.9%) 증가한 1조 6,373억원 7,3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농특회계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회수 및 예탁이자 수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특회계 전입금 1,500억원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1,200억원(400.0%) 증가한 1,500억원으로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2조 2,651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54억 7,800만원(12.2%)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1,486,546	2,019,636	2,019,636	2,265,114	245,478	12.2
□ 사업비	430,138	356,654	356,654	463,959	107,305	30.1
○ 대위변제	407,437	330,300	330,300	438,010	107,710	32.6
○ 보증료환급	5,409	5,637	5,637	5,689	52	0.9
○ 구상권관리비	11,371	14,245	14,245	13,884	△361	△2.5
○ 위탁사업비	3,439	3,850	3,850	3,754	△96	△2.5
○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2,482	2,622	2,622	2,622	-	-
□ 기금운영비	53,495	55,609	55,609	57,281	1,672	3.0
○ 인건비	47,729	48,965	48,965	50,434	1,469	3.0
○ 기타운영비	5,766	6,644	6,644	6,847	203	3.1
□ 여유자금운용	1,002,913	1,607,373	1,607,373	1,743,874	136,501	8.5
○ 통화금융기관예치	736,214	1,607,373	1,607,373	1,713,874	106,501	6.6
○ 예치금융가증권매입	266,699	-	-	30,000	3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사업비 계획안은 4,639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3억 500만원(30.1%)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572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200만원(3.0%) 증가함.
-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1조 7,438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5억 100만원(8.5%) 증가함.

- 최근 5년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산업금융지원(2400)	3,796	3,796	3,493	3,493	3,540	3,540
기금운영비(3300)	576	576	557	557	548	548
여유자금운용(9700)	6,935	7,935	16,449	16,449	17,941	17,941
합 계	11,307	12,307	20,499	20,499	22,029	22,029
프로그램명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안(B)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산업금융지원(2400)	3,460	4,365	3,566	3,566	4,639	
기금운영비(3300)	548	548	556	556	573	
여유자금운용(9700)	18,948	18,044	16,074	16,074	17,439	
합 계	22,957	22,957	20,196	20,196	22,651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4,639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3억 500만원(30.1%) 증가함.

- 2025년도 사업비 계획안의 주요 증액내역으로 ‘대위변제금’은 전년 대비 1,077억 1,000만원(32.6%) 증액된 4,380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430,138	356,654	356,654	463,959	107,305	30.1
○ 대위변제	407,437	330,300	330,300	438,010	107,710	32.6
○ 보증료환급	5,409	5,637	5,637	5,689	52	0.9
○ 구상권관리비	11,371	14,245	14,245	13,884	△361	△2.5
○ 위탁사업비	3,439	3,850	3,850	3,754	△96	△2.5
○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2,482	2,622	2,622	2,622	-	-

(자료: 금융위원회)

- ‘대위변제금’은 전년 대비 1,077억 1,000만원(32.6%) 증액된 4,38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보증료환급’은 전년 대비 5,200만원(0.9%) 증액된 56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구상권관리비’는 전년 대비 3억 6,100만원(△2.5%) 감액된 13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9,600만원(△2.5%) 감액된 37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3) 기금운영비

-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572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200만원(3.0%) 증가함.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53,495	55,609	55,609	57,281	1,672	3.0
○ 인건비	47,729	48,965	48,965	50,434	1,469	3.0
○ 기타운영비	5,766	6,644	6,644	6,847	203	3.1
- 기금관리비	5,550	5,736	5,736	5,939	203	3.5
- 선급법인세	216	908	908	908	-	-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전년 대비 14억 6,900만원(3.0%) 증액된 504억 3,4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전년 대비 2억 300만원(3.5%) 증액된 59억 3,900만원으로 편성됨.
- ‘선급법인세’는 전년과 동일한 9억 800만원으로 편성됨.

(4)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기금운영비 및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 투자폴, 국채, 금융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365억 100만원(8.5%) 증액된 1조 7,438억 7,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1,002,913	1,607,373	1,607,373	1,743,874	136,501	8.5

(자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0	2021	2022	2023	2024.9.	2025(전망)
□ 예치금	1.52	1.09	2.05	4.24	3.90	3.50
□ 채권	1.99	△0.36	△0.32	4.75	3.77	1.53
□ 수익증권	3.18	0.01	△4.41	8.05	4.40	-
계	2.04	0.67	0.49	5.06	4.09	-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 계획

- 2025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액은 8조 8,714억원이며, 보증잔액은 2024년 추정 규모인 18조 1,320억원 대비 160억원 증가한 18조 1,480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5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금융기관 출연금 2,412억원 등에 따라 2024년도 추정 규모인 1조 220억원 대비 778억원 증가한 1조 998억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운용배수는 2024년 17.7배 대비 1.2배 하락한 16.5배로 계획하였음.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보증공급	89,599	84,000	84,000	88,714	4,714	5.6
□ 보증잔액	176,420	181,320	181,320	181,480	160	0.1
□ 기본재산	10,476	10,220	10,220	10,998	778	7.6
□ 운용배수	16.8	17.7	17.7	16.5	△1.2	△6.8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보증공급	79,201	86,112	81,871	80,147	96,402	89,599
□ 보증잔액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 기본재산	15,306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 운용배수	9.7	15.4	16.7	15.2	14.6	16.8

(자료: 금융위원회)

4. 공적자금상환기금

1) 수입계획안

-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6조 4,384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조 4,508억 2,900만원(40.9%)이 감액 편성됨.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8,883,298	10,889,253	10,889,253	6,438,424	△4,450,829	△40.9
□ 재산수입	1,463	888	888	885	△3	△0.3
□ 경상이전수입	2,600,000	4,250,000	4,250,000	3,800,000	△450,000	△10.6
□ 재고자산매각대	534	30,099	30,099	18,908	△11,191	△37.2
□ 세계잉여금	1,684,340	-	-	-	-	-
□ 일반회계 전입금	303,860	2,500,000	2,500,000	2,500,000	-	-
□ 특별회계 전입금	110,705	115,655	115,655	118,631	2,976	2.6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4,124,204	3,992,611	3,992,611	-	△3,992,611	△100
□ 여유자금 회수	58,193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일반회계전입금 2조 5,000억원, 경상이전수입 3조 8,000억원, 특별회계전입금 1,186억 3,100만원, 재고자산매각대 189억 800만원 등으로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안은 6조 4,384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조 4,508억 2,900만원(40.9%)이 감액 편성됨.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8,883,298	10,889,253	10,889,253	6,438,424	△4,450,829	△40.9
□ 기금운영비	5	128	128	57	△71	△55.5
○ 기금관리비	3	5	5	5	-	-
○ 자산매각비	2	123	123	52	△71	△57.7
□ 정부내부지출	8,883,281	10,339,173	10,339,173	6,436,021	△3,903,152	△37.8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8,345,572	9,789,418	9,789,418	5,997,739	△3,791,679	△38.7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537,709	549,755	549,755	438,282	△111,473	△20.3
□ 여유자금운용	12	549,952	549,952	2,346	△547,606	△99.6
○ 통화금융기관예치	-	549,952	549,952	2,346	△547,606	△99.6
○ 한국은행예치	12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6조 4,360억원, 기본경비 및 현물자산 매각을 위한 기금운영비 5,700만원 등으로 편성됨.
- 최근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내부거래·여유자금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금융정책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공적자금상환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 원, %)

프로그램명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131	131	159	159	1	1
기금운영비(3500)	1	1	1	1	1	1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9100)	93,236	93,236	52,544	62,902	44,054	64,025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9200)	10,643	10,643	8,444	8,448	7,031	7,031
여유자금운용(9700)	301	301	276	276	283	283
합 계	104,313	104,313	61,424	71,785	51,370	71,341
프로그램명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획안(B)	
금융정책(1100)	-	-	-	-	-	
기금운영비(3500)	1	1	1	1	1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9100)	103,426	83,456	97,894	97,894	59,977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9200)	6,584	6,515	5,498	5,498	4,383	
여유자금운용(9700)	182	182	5,500	5,500	23	
합 계	110,193	90,153	108,893	108,893	64,384	

(자료: 금융위원회)

(2) 기금운영비

-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원(55.5%)이 감소함.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5	128	128	57	△71	△55.5
○ 기금관리비	3	5	5	5	-	-
○ 자산관리비	-	-	-	-	-	-
○ 자산매각비	2	123	123	52	△71	△57.7

(자료: 금융위원회)

- ‘기금관리비’는 500만원으로 2024년도 계획안과 동일함.
- ‘자산매각비’는 한화오션(舊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시 필요한 매각
주관사 수수료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원(57.7%) 감소함.

(3) 정부내부지출

- 2025년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은 6조 4,360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9,031억 5,200만원(37.8%)이 감소함.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정부내부지출	8,883,281	10,339,173	10,339,173	6,436,021	△3,903,152	△37.8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8,345,572	9,789,418	9,789,418	5,997,739	△3,791,679	△38.7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537,709	549,755	549,755	438,282	△111,473	△20.3

(자료: 금융위원회)

(4) 여유자금운용

- 공적자금상환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기금운영비 및 정부내부지
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전
년 대비 5,476억 600만원(99.6%) 감액된 23억 4,6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12	549,952	549,952	2,346	△547,606	△99.6
○ 통화금융기관예치	-	549,952	549,952	2,346	△547,606	△99.6
○ 한국은행예치금	12	-	-	-	-	-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0	2021	2022	2023	2024.9	2025(전망)
☐ 예치금	1.45	0.72	1.33	4.01	3.74	3.34
☐ MMDA	-	0.35	0.2	-	-	-
계	1.45	0.71	1.33	4.01	3.74	3.34

(자료: 금융위원회)

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수입계획안

-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4조 7,4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6억원(2.3%)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4,904,634	4,641,030	4,641,030	4,749,605	108,575	2.3
□ 재산수입	385,703	292,107	292,107	344,855	52,748	18.1
□ 경상이전수입	2,497,406	2,544,120	2,544,120	2,660,038	115,918	4.6
□ 관유물매각대	80,000	1,033,172	1,033,172	525,330	△507,842	△49.2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941,526	771,631	771,631	1,219,382	447,751	58.0

(자료: 예금보험공사)

- ‘재산수입’은 출자금융기관 주식 배당금, KR&C(정리금융회사) 대출금 이자수입 및 기금의 대기성 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출자금융기관 주식 배당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27억 4,800만원(18.1%) 증가한 3,448억 5,500만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른 금융권 특별기여금 수입 등으로, 최근 특별기여금 수납액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59억 1,800만원(4.6%) 증가한 2조 6,600억 3,800만원이 편성됨.
- ‘관유물매각대’는 출자금융회사 주식 매각수입으로 ‘24년 중 우리 금융지주 지분 매각 완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078억 4,200만원 (49.2%) 감소한 5,253억 3,0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는 상환기금채권의 발행 및 기초 보유자금으로 2025년에는 기초 보유자금만 존재하여, 전년 대비 4,477억 5,100만원(58.0%) 증가한 1조 2,193억 8,200만원이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계획안은 4조 7,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6억원(2.3%)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4,904,634	4,641,030	4,641,030	4,749,605	108,575	2.3
□ 사업비	277	3,652	3,652	2,677	△975	△26.7
○ 전입금환급	-	3	3	3	-	-
○ 소송및법적절차비	220	8	8	7	△1	△12.5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57	3,641	3,641	2,667	△974	△26.8
□ 기금운영비	3,229	3,450	3,450	3,103	△347	△10.1
○ 인건비	2,930	3,095	3,095	2,844	△251	△8.1
○ 기금관리비	299	355	355	259	△96	△27.0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600,000	4,250,000	4,250,000	3,800,000	△450,000	△10.6
□ 채권 원리금 상환	-	-	-	-	-	-
○ 채권 원금 상환	-	-	-	-	-	-
○ 채권 이자 상환	-	-	-	-	-	-
□ 여유자금운용	2,300,794	383,928	383,928	943,825	559,897	145.8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사업비 계획안은 26억 7,700만원으로 출자 주식 매각계획 상 기타정리자문경비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억원 7,500만원(26.7%) 감액되었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1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700만원(10.1%) 감소함.

○ 2025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은 9,438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98억 9,700만원(145.8%)이 증가함.

□ 최근 5년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차입금등원금상환(9800)이 '21년까지 주요 지출 항목이며 그 외 사업비 성격의 금융정책(1100), 경상비용 성격의 기금운영비(3500), 기말자금인 여유자금운용(9700)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1년 부채상환 완료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을 신규 편성함.

<최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1,473	1,473	1,059	1,059	808	808
기금운영비(3500)	37	37	36	36	36	40
여유자금운용(9700)	14,993	14,993	134	134	7,126	7,123
차입금등원금상환(9800)	24,000	24,000	16,800	16,800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	-	-	12,500	12,500	24,000	24,000
합 계	40,503	40,503	30,529	30,529	31,970	31,970
프로그램명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안(B)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879	879	37	37		27
기금운영비(3500)	34	34	35	35		31
여유자금운용(9700)	7,716	7,716	3,839	3,839		9,438
차입금등원금상환(9800)	-	-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	26,000	26,000	42,500	42,500		38,000
합 계	34,630	34,630	46,410	46,410		47,496

(자료: 예금보험공사)

(2) 사업비

-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26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 7,500만원(26.7%) 감소함.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277	3,652	3,652	2,677	△975	△26.7
○ 전입금환급	-	3	3	3	-	-
○ 소송및법적절차비	220	8	8	7	△1	△12.5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57	3,641	3,641	2,667	△974	△26.8

(자료: 예금보험공사)

- ‘전입금환급’ 사업은 금융구조조정 지원자금 관련 사후정산비용으로 2024년 계획과 동일한 300만원이 편성됨.
- ‘소송 및 법적절차비’ 사업은 종결재단 관련된 소송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12.5%) 감액한 7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사업은 ‘24년 중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완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억 7,400만원(26.8%) 감액한 26억 6,7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1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700만원(10.1%) 감소함.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3,229	3,450	3,450	3,103	△347	△10.1
○ 인건비	2,930	3,095	3,095	2,844	△251	△8.1
○ 기금관리비	299	355	355	259	△96	△27.0

(자료: 예금보험공사)

- ‘인건비’는 기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상환기금 전담인력의 인건비 부담액으로, 전년 대비 2억 5,100만원(8.1%) 감액된 28억 4,4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상환기금 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적인 경비로, 전년 대비 9,600만원(27.0%) 감액된 2억 5,900만원이 편성됨.

(4)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은 부채 상환 완료 후 여유자금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4,500억원(10.6%) 감액된 3조 8,00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600,000	4,250,000	4,250,000	3,800,000	△ 450,000	△ 10.6

(자료: 예금보험공사)

(5) 채권 원리금 상환

☐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은 없음.

○ '21년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채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채권 및 이자 상환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6) 여유자금운용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규모는 기말보유자금으로
전년 대비 5,598억 9,700만원(145.8%) 증가한 9,438억 2,5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2,300,794	383,928	383,928	943,825	559,897	145.8

(자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0	2021	2022	2023	2024.9.	2025(전망)
☐ 예치금	1.55	0.95	2.45	4.05	3.96	-
☐ 채권	-	0.65	2.28	3.80	3.67	-
☐ 수익증권(MMF)	1.04	0.82	2.32	3.92	-	-
☐ 수익증권(국공채형)	-	-	-	5.02	-	-
☐ 수익증권(완전위탁)	-	-	-	-	3.91	3.16
계	1.53	0.94	2.40	4.12	3.92	3.16

(자료: 예금보험공사)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수입계획안

-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계획안은 510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1400만원(20.3%)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54,198	64,109	64,109	51,095	△13,014	△20.3
□ 재산수입	132	118	118	284	166	140.7
□ 경상이전수입	27,033	31,463	31,463	24,147	△7,316	△23.3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	1,065	1,065	2,517	1,452	136.3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7,033	31,463	31,463	24,147	△7,316	△23.3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액으로서, 전년 대비 1억 6,600만원(140.7%)이 증액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구성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출연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정부출연금으로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1/2이상을 출연함. 2025년도 각각 전년 대비 73억 1,600만원 감소한 241억 4,7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2024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운용중인 기금 여유자금 잔액으로서 2025년도 수입계획안은 25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200만원 증액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출계획안은 510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1400만원(20.3%)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54,198	64,109	64,109	51,095	△13,014	△20.3
□ 사업비	54,135	61,806	61,806	50,086	△11,720	△19.0
○ 저축장려금	54,135	61,806	61,806	50,086	△11,720	△19.0
□ 기금운영비	-	1	1	1	-	-
○ 기금관리비	-	1	1	1	-	-
□ 여유자금운용	63	2,302	2,302	1,008	△1,294	△56.2
○ 한국은행예치	63	10	10	9	△1	△10.0
○ 통화금융기관예치	-	2,292	2,292	999	△1,293	△56.4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사업비 계획안은 500억 8,600만원으로 2024년도 계획 대비 117억 2,000만원(19.0%)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출장 및 성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계획과 동일함.

- 2025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계획안은 10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400만원(56.2%) 감액됨.

-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저축장려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저축장려(1600)	66,671	67,757	67,079	68,233	54,628	54,628
기금운영비(3200)	1	-	1	-	1	1
여유자금운용(9700)	1,337	4	1,346	7	1,088	1,088
합 계	68,009	67,761	68,426	68,240	55,717	55,717
프로그램명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안(B)
	당초	수정	당초	1차추경	2차추경	
저축장려(1600)	53,082	53,082	61,806	61,806	61,806	50,086
기금운영비(3200)	1	1	1	1	1	1
여유자금운용(9700)	1,070	1,070	2,302	2,302	2,302	1,008
합 계	54,153	54,153	64,109	64,109	64,109	51,095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업비 계획안은 500억 8,600만원으로 예상저축만기도래자 증가에 따라 예상 저축장려금 지급액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전년 대비 117억 2,000만원(19.0%) 감액됨.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54,135	61,806	61,806	50,086	△11,720	△19.0
○ 저축장려금	54,135	61,806	61,806	50,086	△11,720	△19.0

(자료: 금융위원회)

(3) 여유자금운용

- ☐ 자금의 유입시기 및 지급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 규모는 2025년에 10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400만원(56.2%) 감액 편성됨.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63	2,302	2,302	1,008	△1,294	△56.2

(자료: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0	2021	2022	2023	2024.10
☐ 예치금	0.74	0.71	1.73	3.69	3.47
☐ 채권	-	-	-	-	-
☐ 수익증권	-	-	-	-	-
계	0.74	0.71	1.73	3.69	3.47

(자료: 금융위원회)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붙임> 참조

(수석전문위원 : 최병권, 전문위원 : 최기도)

V. 대체토론의 요지

1. 국가보훈부 소관

- 광복회 관리비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노력할 필요

2. 금융위원회 소관

-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일부 기금들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어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제도개선 필요
- 햇살론15를 중심으로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정문 위원장)

1. 국가보훈부 소관

○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 보훈기금 지출 관련 참전기념사업지원 사업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예산 14억원을 일반회계에 신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 관련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사업 중 월간 순국지 구입 예산을 1억 2,000만원 감액하고,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전담인력 증원 등을 위해 독립유공자묘소관리사업 예산을 5억 8,500만원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회 소관

○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 신용보증기금 수입의 경우,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지출의 경우,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실적을 고려하여 대환보증대위변제사업 예산 3,878억 2,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4,382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 예산 520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기금은 각각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경우,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Ⅶ. 찬반토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Ⅷ. 심사결과

1. 국가보훈부 소관

가. 보훈기금

- 1) 보훈기금 수입 : 원안의결
- 2) 보훈기금 지출 : 수정의결

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 원안의결
-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 : 수정의결

2. 금융위원회 소관

가. 신용보증기금 수입지출 : 수정의결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X. 부대의견

1. 국가보훈부 소관

-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매각결정 취소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88골프장을 존치하는 방안을 마련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전환이 보훈복지의 위축 및 사각지대 확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재검토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사실상 지급보증의 성격이 있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사고 채권 양수의 수행 방식과 소요 채원 규모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고, 구분 편성 내역을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제출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수입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보유한 친일 재산 매각에 만전을 기한다.
- 국가보훈부는 순국지를 QR코드, SNS 등의 수단을 통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지역 간 격차 문제 및 보훈급여금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포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각종 보상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각 세부사업별로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한다.
- 국가보훈부는 각 세입항목의 수납율 추이,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개선한다.

2. 금융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는 FATF TRAIN 운영비용의 세부 집행내역 및 계획을 제출받아 총액 기준이 아닌 항목별 실집행액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조속히 MOU 개정을 추진하여 FATF TRAIN 운영비용의 회원국 간 공동부담 방안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예상사업손실률 증가로 인해 연도 내 신규 보증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금융위원회는 기존 협약기관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을 연 내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월별 한도액을 제시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고, 유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가입유지자 수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기여금 지원 확대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명확히 결정한다.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재원 확보 방안 등 연간 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정책을 가계부채 정책과 연계하여 총량관리 부분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에 반도체생태계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가 새롭게 조성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펀드가 사업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경유 출자금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년 회수재원 규모, 회수재원 운용 및 투자 현황, 투자계획 등을 매년 9월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자펀드 결성이 조속히 완료되어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추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정부는 원전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을 원전 분야 사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한다.
-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원전산업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50%)이 재정 및 공공기관 출자비율(70%)에 비해 낮으므로, 주목적 투자비율을 60%로 상향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캠퍼스 개발

행을 통한 자체재원 조달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출자분이 새출발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계획대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의 규모와 방식을 검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적 추이를 보아가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인턴들이 제대로 된 업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단순 사무보조 업무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청년인턴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5년 증액된 홍보 목적의 일반용역비를 불법사금융 방지, 새출발기금 성과 제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활성화 등 민생 분야 홍보에 집중한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제도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사업지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관련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대환보증 예상 잔여재원 일부를 재원

이 부족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 건전성 제고 및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하여 채권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구상권 관리를 철저히 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의 상환을 완료하기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예산(2조 5,000억원)이 증액될 필요와 함께 예수금을 최소화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금 수입의 적극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상환기금 보유지분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한화생명보험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유주식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의 청산일이 2027년 12월이므로 KR&C에 대한 대출금 회수 노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려금리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하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그에 따른 절감분(1억 8,700만원)은 수혜기업을 확대하는 데에 사용한다.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정산지연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 수행후 금리 인하로 인한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2026년 예산안

편성시 이를 고려한다.

-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원전산업성장펀드에 대한 민간출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삭감액(3,500만원)은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및 1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각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하도록 한다.
- 기업구조개선펀드 회수액 167억원을 혁신성장펀드에 산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7,600억원)의 이자수익 600억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 첨부 : 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조정내역

【 첨부 】

**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4. 11

I.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1) 수입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보훈기금	-	-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	-
	금융위원회	신 용 보 증 기 금	-	△10,000	△10,000
		주 택 금 융 신 용 보 증 기 금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
		공 적 자 금 상 환 기 금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	-
	합 계		-	△10,000	△10,000

(2) 지출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보훈기금	-	△300	△3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585	△120	465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52,054	△438,221	△386,16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
		공적자금상환기금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	-
	합 계		52,639	△438,641	△386,002

II.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가. 국가보훈부

1. 보훈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조정내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목명 (000-00)	2024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참전기념사업 지원 (4163-439)	456	456	687	387	△300	○ 일반회계에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인 ‘재향군인회 선양 활동’을 신설(14억원 증액)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내역사업인 ‘공법단체 주관 참전기념사업’ 중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금액 3억원 감액	※증감액연계 (일반회계-기금 간)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조정내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목명 (000-00)	2024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3141-402)	267	267	589	469	△120	○ 동 사업은 독립유공자 공훈록 등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을 통해 올바른 독립운동사 정립과 독립유공자 공훈선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 내역사업인 ‘월간 순국지 구입’(5억원, 전년 대비 3억 1,000만원 증액)의 구입 부수 증가폭을 축소하여 1억 2,000만원 감액	
2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3141-403)	398	398	398	983	585	○ 동 사업은 국내외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및 국립묘지로의 이장 지원 등을 통하여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 및 사후 예우를 내실화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내외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 및 묘소 관리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하여 5억 8,500만원 증액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없음

나. 금융위원회

1.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단위: 백만원)

연번	목명 (000-00)	2024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 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기타경상이전 수입 (59-596)	761,325	761,325	883,983	873,983	△10,000	○ (사업내용) 구상채권 회수금, 선급법인세 환수, 공탁금반환 등 각종 반환금 수입을 계상한 것임. ※ 신용보증기금은 '팩토링금융' 사업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팩토링 매출채권의 평균 결제기일이 69일로 매입 채권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회수됨. ○ 팩토링 매출채권 결제기일 소요에 따른 회수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100억원 감액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유동화회사보 증 대위변제 (2431-301)	397,104	397,104	596,887	546,887	△50,000	○ (사업내용) 유동화전문회사(SPC)가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선순위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SPC가 금융기관(유동화업무수탁은행)과 체결하는 신용공여약정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 집행률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3">계획액</th><th rowspan="2">계획 현액(B)</th><th rowspan="2">집행액 (C)</th><th rowspan="2">집행률 (C/A)</th></tr><tr><th>당초</th><th>증감액</th><th>수정(A)</th></tr><tr><td>2021</td><td>256,055</td><td>-</td><td>256,055</td><td>256,055</td><td>150,542</td><td>58.8</td></tr><tr><td>2022</td><td>181,211</td><td>-</td><td>181,211</td><td>181,211</td><td>49,025</td><td>27.1</td></tr><tr><td>2023</td><td>328,007</td><td>△100,000</td><td>228,007</td><td>228,007</td><td>34,590</td><td>15.2</td></tr></table> ○ 계획 대비 집행률이 부진하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500억원 감액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당초	증감액	수정(A)	2021	256,055	-	256,055	256,055	150,542	58.8	2022	181,211	-	181,211	181,211	49,025	27.1	2023	328,007	△100,000	228,007	228,007	34,590	15.2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당초	증감액	수정(A)																																				
2021	256,055	-	256,055	256,055	150,542	58.8																																	
2022	181,211	-	181,211	181,211	49,025	27.1																																	
2023	328,007	△100,000	228,007	228,007	34,590	15.2																																	
2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2431-316)	555,474	555,474	347,946	400,000	52,054	○ (사업내용) 신용보증기금(보증) - 시중은행(대출) - 정부(재정출연)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의 자금애로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520억 5,4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 이유	비고
		당초	수정					
3	대환보증 대위변제 (2431-317)	254,436	254,436	713,921	326,100	△387,821	○ (사업내용) 저금리 보증부대출로의 전환지원 사업으로, 대환보증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응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 ※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2022년 개시되어, 2024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신용보증기금은 9조 5,000억원 공급목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로부터 이미 7,600억원의 출연을 받았고, 대환보증 대위변제 지출계획액을 2023년부터 편성하고 있음 ○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2024년말까지의 보증공급목표(9조 5,000억원) 중 2024년 10월 기준 1조 6,089억원(목표대비 16.9%)만 공급하였음에도, 2025년도 대환보증대위변제 계획안은 공급목표를 전액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과다산출 되었으므로, 3,878억 2,100만원 감액	
4	프론트원 운영 (2431-312)	6,720	6,720	7,060	6,660	△400	○ (사업내용) 청년 창업 보육공간인 프론트원(FRONT1) 건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청년창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프론트원 운영 사업은 실소요액에 비해 과다편성됨에 따라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4억원 감액	

2.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없음

Ⅲ. 부대의견

1. 국가보훈부 소관

-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매각결정 취소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88골프장을 존치하는 방안을 마련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전환이 보훈복지의 위축 및 사각지대 확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재검토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사실상 지급보증의 성격이 있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사고 채권 양수의 수행 방식과 소요 재원 규모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고, 구분 편성 내역을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제출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수입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보유한 친일 재산 매각에 만전을 기한다.
- 국가보훈부는 순국지를 QR코드, SNS 등의 수단을 통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지역 간 격차 문제 및 보훈급여금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포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각종 보상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각 세부사업별로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한다.
- 국가보훈부는 각 세입항목의 수납율 추이,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개선한다.

2. 금융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는 FATF TRAIN 운영비용의 세부 집행내역 및 계획을 제출받아 총액 기준이 아닌 항목별 실집행액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조속히 MOU 개정을 추진하여 FATF TRAIN 운영비용의 회원국 간 공동부담 방안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예상사업손실률 증가로 인해 연도 내 신규 보증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금융위원회는 기존 협약기관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을 연내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월별 한도액을 제시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고, 유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가입유지자 수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기여금 지원 확대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명확히 결정한다.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재원 확보 방안 등 연간 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

책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정책을 가계부채 정책과 연계하여 총량관리 부분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에 반도체생태계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가 새롭게 조성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펀드가 사업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경유 출자금의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년 회수재원 규모, 회수재원 운용 및 투자 현황, 투자계획 등을 매년 9월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자펀드 결성이 조속히 완료되어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추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정부는 원전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을 원전 분야 사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한다.
-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원전산업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50%)이 재정 및 공공기관 출자비율(70%)에 비해 낮으므로, 주목적 투자비율을 60%로 상향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캠퍼스채 발행을 통한 자체재원 조달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출자분이 새출발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계획대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의 규모와 방식을 검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적 추이를 보아가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인턴들이 제대로 된 업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단순 사무보조 업무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청년인턴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5년 증액된 홍보 목적의 일반용역비를 불법사금융 방지, 새출발기금 성과 제고, 채무자대리

인 선임 활성화 등 민생 분야 홍보에 집중한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제도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사업지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관련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대환보증 예상 잔여재원 일부를 재원이 부족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 건전성 제고 및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하여 채권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구상권 관리를 철저히 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의 상환을 완료하기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예산(2조 5,000 억원)이 증액될 필요와 함께 예수금을 최소화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금 수입의 적극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상환기금 보유지분을 원활히 매각 할 수 있도록 하고, 한화생명보험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유주식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의 청산일이 2027년 12월이므로 KR&C에 대한 대출금 회수 노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려금리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하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그에 따른 절감분(1억 8,700만원)은 수혜기업을 확대하는 데에 사용한다.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정산자연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후 금리 인하로 인한 추가 수

요가 발생하면, 2026년 예산안 편성시 이를 고려한다.

-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원전산업성장펀드에 대한 민간출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삭감액(3,500만원)은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및 1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각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하도록 한다.
- 기업구조개선펀드 회수액 167억원을 혁신성장펀드에 산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7,600억원)의 이자수익 600억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 불 임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4. 11.

【 국가보훈부 소관 】

I. 총괄

1. 보훈분야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가. 보훈체계 현황¹⁾

□ 우리나라 보훈 정책은 1950년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 제정 이후, 1961년 6·25전쟁 전몰군경유족 및 전상군경 지원목적의 군사원호청이 발족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보훈 정책은 독립, 6·25전쟁, 베트남전쟁, 민주화 운동 등 근현대사에 굽직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보훈 영역에 포함되어온 특징을 가지고 있음.²⁾

□ 상이 및 전사 군경에 대한 생계지원에서 출발했던 보훈 정책은 유공자들에 대한 자활시책 등의 물질적인 지원과 정신적인 예우를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보훈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1985년 시혜적 원호에서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 업무로 전환(원호처

- 국가보훈처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8년 제대군인지원

업무는 군인보험 지급, 일선장병 위문에서 취업·생활지원, 국립묘

1) 홍익표, '보훈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1-01 및 제4차 보훈발전기 본계획에서 발췌·정리

2) - 60년대: 독립유공자, 4·19혁명 관련자

- 80년대: 순직·공상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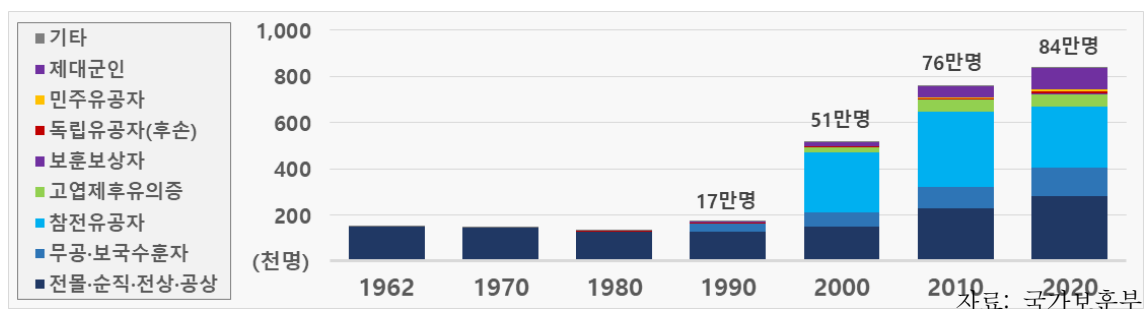
- 90년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제대군인

- 2000년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특수임무수행자

지 안장, 전직지원금까지 확대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보훈대상자가 새로이 진입됨.

- 1993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94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98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5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2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각각 제정됨.

《 보훈대상자 구성 및 규모 추이 》



- 2005년에는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제화했으며,³⁾ 이를 통해 보훈 정책의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방법, 보훈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등 필요한 사항들을 수립하도록 함.⁴⁾

- 2012년에는 50여 년 간 이어져온 보훈보상체계가 대폭 개편되었음.

3) 「국가보훈기본법」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현재는 제5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23-2027)

-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을 시작함.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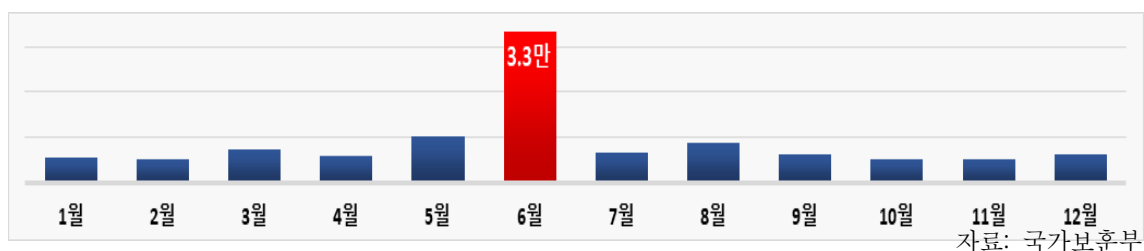
□ 그러나, 아직 보훈이 국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아직 저조함.

○ 국민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아직 부족하다고 인식함.

- 2022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는 응답은 31.9%로, ‘그렇지 않다’ 42.1%보다 낮게 나타남.

○ 보훈이 일상 속 문화보다는 특정 시기의 이벤트로 인식되는 경향이 존재함.

《 SNS 등 소셜 빅데이터 분석 : 월별 “보훈” 키워드 언급량(‘17.~’21. 5년간) 》



-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만족도는 낮은 수준에 정체된 실정이며, 보훈대상자가 자신의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이 저하된다고 답하고 있음.

5) 이는 보훈의 정체성 문제, 보훈과 복지의 경계 문제, 예우와 보상 분류 문제, 보훈 대상의 문제 등(한국법제연구원, 2009)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음

- 보훈정책 만족도 : ('18.) 18% → ('21.) 18.2% / 3년간 0.2%p 상승
-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 : ('18.) 63% → ('21.) 51.7% / 3년간 △11.3%p 하락
- * 자긍심을 못 느끼는 이유 :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서” 1위(64.9%)

나. 보훈예산 현황

- 보훈의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한 보훈정책이 등장함에 따라, 보훈대상과 보훈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보훈대상은 1962년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유공자 등 15만명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제대군인 지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13년에는 80만명, 2024년 83만명으로 3.75%가 증가했음.
- 보훈예산 역시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 5조원, 2023년 6조원을 각각 돌파하였음.
-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지출 규모는 6조 3,948억원으로 2024년도 대비 3.3% 증가하였는 바, 정부 예산안 677.4조원 중 0.94%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보훈예산과 정부예산에 대한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5년 예산안
정부예산(A)	58,040	226,894	864,740	2,012,835	3,014,172	6,774,374
보훈예산(B)	625	3,742	12,464	34,325	53,186	63,948
B/A	1.08	1.65	1.44	1.71	1.76	0.94

자료: 국가보훈부

- 취업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지원의 범위는 매년 넓어지고 있는 추세임. 2011년 약 10만 4천 명의 취업지원자(본인, 유가족)는 2023년 11만 6천 명까지 약 10%가 늘었음.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취업 현황	취업지원	104,392	106,677	114,464	115,697	118,215	119,666	116,554
	본인	8,976	9,921	11,337	12,639	13,749	14,686	14,714
	유가족	95,416	96,756	103,127	103,058	104,466	104,980	101,840

자료: 국가보훈부

-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보훈예산의 정부예산 점유비율은 80년대 초 약 1.09%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1.7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 선진국의 정부예산 점유비율(미국 4.6%, 호주 1.2%, 캐나다 1.4%)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규모가 많이 떨어지는 실정임.

□ 또한, 보훈예산 중 보상금 예산의 비율은 80.5%에 이르고 있음.

<보상금 예산규모>

구분	보훈예산	보훈급여금	구성비율(%)
1990	3,742억원	3,195억원	85.4
2000	1조2,464억원	1조284억원	82.5
2010	3조4,325억원	2조6,449억원	77.1
2020	5조5,078억원	4조3,715억원	79.4
2025(안)	6조3,438억원	5조1,093억원	80.5

자료: 국가보훈부

<보상금 지급현황>

(인원: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보상금	191,866	3,059,336	192,964	3,197,518	190,606	3,325,248
간호수당	2,620	55,479	2,503	56,610	2,357	56,243
생활조정수당	9,097	29,798	16,473	42,027	21,365	55,899
6.25자녀수당	27,546	288,573	27,398	299,431	27,952	328,809
고엽제수당	37,273	305,634	35,115	298,384	34,614	310,694
무공영예수당	12,193	59,084	10,668	52,957	10,134	55,163
참전명예수당	162,637	664,623	144,756	608,794	138,010	646,292
4.19혁명공로수당	277	1,166	276	1,196	275	1,323
사망일시금	6,818	8,304	6,818	8,304	7,171	8,748
재해보상금	173	14,802	8	78	8	178

자료: 국가보훈부

다. 검토의견 :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2025년 예산안은 ‘보훈보상금’을 제외한 모든 단위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고, 신규 세부사업은 사실상 없음. 또한,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최근 계속 하락추세이고, 보상금을 제외한 다른 분야 예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향후 국가보훈부는 각종 보상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① 2025년 예산안 : ‘보훈보상금’을 제외한 모든 단위사업 예산이 삭감

□ 2025년도 예산안을 프로그램사업과 단위사업 단위로 각각 살펴보면, 프로그램사업 기준으로는 8개 중 ‘보훈심사및보상’과 ‘보훈예우및국립묘지’ 2개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고, 단위사업 기준으로는 26개 중 ‘보훈보상금’과 ‘국립묘지조성및관리’ 2개 사업을 제외한 24개의 단위사업 예산이 삭감됨. 그러나, 표면적으로 증액된 ‘보훈예우및국립묘지’ 프로그램사업 내에 ‘국립묘지조성및관리’ 단위사업은 국립현충원이 2024년 7월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전년에 비해 감액되었음.

□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6조 4,057억원 대비 757억원(1.2%) 증가한 6조 4,81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보훈

보상금' 예산은 보상금 5% 증액을 위해 1,125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사업 단위로 보면, 보훈보상금과 국립서울현충원(113억 3,300만원) 등 2개 사업에 1,239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단위사업은 482억원 감액됨.

< 2025년도 주요사업비 프로그램별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 사업비	6,053,416	6,132,178	78,762	1.3
○ 보훈심사및보상	5,025,545	5,117,384	91,839	1.8
○ 보훈단체지원	38,870	36,281	△2,589	△6.7
○ 보훈의료복지	676,108	671,765	△4,343	△0.6
○ 생활안정지원	29,002	28,952	△50	△0.2
○ 보훈문화	98,563	97,332	△1,231	△1.2
○ 보훈예우및국립묘지	106,389	125,773	19,384	18.2
○ 제대군인지원	59,188	35,460	△23,728	△40.1
○ 보훈행정	19,751	19,231	△520	△2.6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도 단위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 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보상금	3,468,124	3,580,723	112,599	3.2
○ 수당	1,536,117	1,518,748	△17,369	△1.1
○ 수시보상금	9,982	9,971	△11	△0.1
○ 보훈심사	1,620	1,636	16	1.0
○ 등록심사	9,702	6,306	△3,396	△35.0
○ 보훈단체지원	38,870	36,281	△2,589	△6.7
○ 교통시설이용지원	11,329	10,729	△600	△5.3
○ 의료지원	656,737	649,800	△6,937	△1.1
○ 의료환경개선	8,042	11,236	3,194	39.7
○ 교육지원	26,237	26,134	△103	△0.4
○ 취업지원	2,765	2,818	53	1.9
○ 독립기념관	28,176	27,479	△697	△2.5
○ 보훈문화진흥	25,261	20,858	△4,403	△17.4
○ 현충시설	37,307	31,711	△5,596	△15.0
○ 기념사업	7,819	17,284	9,465	121.1
○ 공헌발굴및국가유공자등예우	11,967	10,957	△1,010	△8.4
○ 국립묘지 조성 및 관리	94,422	114,816	20,394	21.6
○ 제대군인 생활안정	25,748	25,292	△456	△1.8
○ 참전·제대군인 명예선양	33,440	10,168	△23,272	△69.6
○ 청관사임차 및 시설개선	5,504	5,236	△268	△4.9
○ 일반행정	5,412	5,107	△305	△5.6
○ 보훈서비스지원	4,663	4,456	△207	△4.4
○ 정보화	4,172	4,432	260	6.2

자료: 국가보훈부

② 신규사업 발굴 필요

- 2025년도 예산안 중 신규 세부사업은 ‘광복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등 2개 사업임. 그러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10년마다 편성되는 사업이며, ‘국립서울현충원’ 사업은 국립현충원이 2024년 7월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편성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신규 세부사업은 없다고도 볼 수 있음. 2025년도 예산안은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후 사실상 첫 번째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음.
- 정전 70주년 및 광복 80주년 등 주기적인 기념사업을 제외하고 2016년 예산부터 2025년 예산안까지 총 10년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단위에서는 신규사업이 존재하지 않음. 이를 내역사업 단위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내역사업조차 신규사업은 총 5개에 불과함.

<최근 10년간 신규 내역사업 목록>

연도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2016	순직경찰 소방공무원 추모행사 지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각종 추모제 행사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
2018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2018	국내 산재묘소	국립묘지 외 전국에 산재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유

연도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유지·관리 지원	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독립유공자 사후 예우 강화
2022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기념사업 추진단 운영 및 기념사업 기획·대국민 홍보
2023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위로행사	호국보훈의 달 및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초청·격려

자료: 국가보훈부

③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앞서 살펴보았듯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2020년 1.76%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추세에 놓여 있으며, 미국 4.6%, 캐나다 1.4% 등 주요 선진국의 비율보다 현저히 낮음.

□ 또한, 보상금을 제외한 다른 분야 예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후술한 개별 사업의 검토 내용과 같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과 의료 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은 실제 소요예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보상금 등에서 이·전용등을 통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충당해오고 있음.

- 보훈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예산 감액 및 신규사업 부재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여러 차례 예산안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따라 예산 증액 및 신규사업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 기본계획’과 ‘2024년 국가보훈발전 과제별 실천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 승격에 맞추어 각종 보상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 성과달성률 제고 필요

가. 사업 개요

- 2007년 1월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인 성과계획서와 계획 대비 실적을 측정하여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각 중앙관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인건비·기본경비가 반영된 비재정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 예산이 반영된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부터 재정사업의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사업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실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인 ‘단위사업’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인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모든 중앙관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정량·결과 지표로 설정하여야 함.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의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2023년도를 포함하여 최근 6년간 평균 달성률이 전체 부처평균보다 저조하므로,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에서 작성한 ‘2025년도 국가보훈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기관의 임무를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5개)-프로그램목표(9개)-성과지표(1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 성과관리체계도 >

임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	
비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 표	전략목표 I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프로그램목표 2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
	전략목표 II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 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3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전략목표 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전략목표 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민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
		프로그램목표 2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체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국가보훈부에서 위 성과계획서에 따른 2023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5개 전략목표의 달성도는 프로그램목표의 경우 75%임.

○ 58개 중앙관서가 재정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총 1,068개 중 819개 (76.7%)가 달성되고 249개(23.3%)가 미달성되었는데, 국가보훈부는 전체 평균인 76.7%보다 낮은 75%를 기록함.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달성률 또한 73.1%로, 같은 기간 전체 부처평균인 75.6%보다 낮은 바,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프로그램 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목적	프로그램 목표	지표(A)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	전체부처평균
2023	5	9	20	15	5	75	76.9
2022	5	9	20	18	2	90	77.4
2021	5	9	12	10	2	83.3	76.6
2020	5	9	12	9	3	75	68.9
2019	5	9	13	7	6	53.8	76.4
2018	5	8	13	8	5	61.5	77.1
평균	5	9	15.4	11.8	3.6	73.10	75.6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실국별로 개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살펴보면, 보상정책국(97.68%), 보훈문화정책관(98.98%), 제대군인국(99.95%)은 100%에 미달함.

<성과지표별·실국별 목표 달성 현황>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보상 정책국	보훈대상자 요건심사해당률(%)	93.9					97.6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소요기간 단축(일)		106.7	102.0			
	신체검사 만족도(점)				100.1	100.2	
	등록관련 행정소송 패소율 (%)				100.0	84.3	
보훈단체 협력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국민호응도(점)	100.3	100.5	102.1			117.95
	보훈단체선양활동 언론보도실적(회)				152.8	117.4	
	지방보훈회관 이용 자 만족도(점)				100.1	100.2	
	보훈단체선양활동 참가자수(명)				100.2	170.8	
복지 증진국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점)	94.7					101.84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점)	100.1	101.9	101.2			
	보훈의료서비스 수혜율(%)		98.4	100.8	100.0	101.5	
	보훈복지서비스 만족도 (점)				100.2	99.9	
	교육지원 만족도(점)	99.3					
	대부지원 만족도(점)	93.0	105.6	106.3	103.1	101.6	
	취업지원 만족도(점)	105.1	103.4	101.1			
	국가유공자 취업목표 달성율(%)				90.0		
	신규취업자 고용유지율(%)					113.0	
	88CC고객만족도(점)	99.9	97.5	98.3			
	88골프장 내장객수(명)				104.9	98.9	
	자기자본 이익률(%)				110.6	85.1	
	이동보훈팀 지원 실적(건)				102.5	141.5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보훈문화 정책관	보훈선양 정책 인 지도 조사(점)	100.0					98.98
	보훈선양 정책 공감도(점)		100.0	0.0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인원(천명)				100.6	180.7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자 추천도(점)				101.0	100.0	
	보훈문화활동 참여의향도(점)				107.4	100.0	
보훈예우 정책관	독립유공자 포상인원(명)	107.8	117.0	109.3	99.7		104.63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평가(점)				102.5	101.2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					103.5	
제대 군민국	행사 참여자 한국인식개선도(점)	100.0					99.94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및 고용 만족도(점)	100.3					
	정부 주관 참전기념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100.0	101.8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만족도(점)		96.5	100.0			
	제대군인 취·창업률 (%)				100.3	100.0	
	참전군인에 대한 존경도(점)				100.1	99.8	
정책 기획관	정보화사용자 만족도(점)	97.4	101.3	107.4			101.95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개선요청 반영률 (%)				103.0	100.8	

자료: 국가보훈부

3. 주요사업비 구조변경 필요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등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 사업은 보훈단체에 인건비 및 복지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보훈단체의 각종 선양활동을 지원하는 보훈단체협력관 소관 사업으로,⁶⁾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3,900만원(2.4%) 감액된 342억 8,1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34,718	35,120	34,281	△839	△2.4

자료: 국가보훈부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은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을 비롯한 참전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스포츠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려는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으로,⁷⁾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8,300만원(10.0%) 감액된 79억 9,1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제대군인지원’ 프로그램(4100) 내의 ‘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 단위사업(4161)에 속한 세부사업이나, 8개의 내역사업 중 제대군

6) 세부사업: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1238-315)

7) 세부사업: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

인군 소관 사업은 1개에 불과함. 나머지 7개의 내역사업 중 6개는 기획조정실 소관이며,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복지증진국 소관임.

< 2025년도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소관부서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국제보훈 교류협력사업	기획조정실	9,135	8,874	7,991	△883	△10.0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기획조정실	3,174	2,302	2,303	-	-
현지참전 기념사업	기획조정실	1,010	1,382	1,121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기획조정실	1,146	1,183	963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기획조정실	2,380	2,673	2,387		
참전국 교류협력강화	기획조정실	312	714	714	-	-
공무직등 인건비	기획조정실	60.4	64	66		
유엔참전 국내기념행사	제대군인국	208	207	187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복지증진국	271	350	350	-	-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국고보조금 연장평가를 반영한 유사사업 통합 필요

- 위의 두 세부사업은 민간경상보조(320-021)⁸⁾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2025년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규모는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에 342억 2,700만원,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에 4억 4,900만원임.

4,100만원 감소하였고,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은 2024년과 동일함.

< 각 세부사업별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소관 실·국	2024년	2025년	증감액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보훈단체운영	보훈단체협력관	26,002	26,228	226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보훈단체협력관	5,931	5,031	△900
	복지회관 등 운영	보훈단체협력관 복지증진국	3,135	2,968	△167
	소계		35,068	34,227	△841

8)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등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소관 실·국	2024년	2025년	증감액
국제보훈 교류사업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기획조정실	-	-	-
	현지참전 기념사업		-	-	-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81	81	-
	참전국 교류협력강화		290	290	-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60	60	-
	공무직등 인건비		-	-	-
	유엔참전 국내기념행사	제대군인국	18	18	-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복지증진국	-	-	-
	소계		449	449	-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은 2024년 예산에 비해 8억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의 내
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
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2023
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편성되기 시작함.

이러한 보조금 예산의 비목전환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3년 국
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일부 내역사업은 정부가 시행주체로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9)10)

9) 동 평가에서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재활과 관

□ 그런데, 동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각각의 내역사업¹¹⁾에 대해,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하였음.¹²⁾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중 사업 통폐합 필요성 지적 >

-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문제점(376p)
 -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 재활과 관련된 사업은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과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의 내용이 유사함
- 개선사항(377p)
 -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 사업은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민간위탁으로 비목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보고서 중 발췌

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국가유공자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조금 비목을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386p)

10) 같은 평가에서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도 「국가유공자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조금 비목을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었음.(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p.375)

11)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 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

12)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보고서(p.376, p.377, p.381, p.386)

<통폐합 필요 지적 사업 비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수행주체	수혜자	비고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보훈단체선양활동 중 의학적 재활과 관련된 사업	국내·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 등	민간위탁 사업 전환
국제보훈 교류사업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선수단의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위리어 게임) 출전 경비 지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 등	민간위탁 사업 전환

자료: 국가보훈부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각 사업의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사업수행주체와 내용, 수혜자 등이 유사한 사업을 별개의 세부사업에서 진행함에 따른 중복 소지를 해소하고 재정 지출의 비효율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특히,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입찰 발주 및 위탁계약, 수탁사업 구분계리,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 등 민간위탁사업비 집행·관리 절차¹³⁾를 이행해야 함을 고려할 때, 별개 사업에서 각각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개선 요구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 2025년 예산안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개편 없이 종전과 같이 각각의 세부사업에 해당 내역사업들을 별도로 편성하였는바,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3)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198~p.200, 민간위탁사업비 비목별 지침

사업 통합방안 및 적정 예산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사업비 구조변경 필요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등

국가보훈부는 국제보훈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편성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는 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 제21조¹⁴⁾는 세출예산을 중앙관서별로 구분한 후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세출예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1개의 프로그램에 1개의 ‘실’ 또는 ‘국’이 포함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임.

그러나 국가보훈부의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위의 국제보훈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프로그램¹⁵⁾ 예산편성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음.

14)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5) 프로그램 예산편성 체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국가재정법에 따라 도입)

- 국가보훈부의 2015년 예산의 경우 38개의 단위사업, 10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2025년 예산안의 경우 32개의 단위사업, 8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그동안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많이 통폐합하였음. 그러나 통폐합된 단위/세부사업의 예산안은 다른 세부/내역사업들이 추가됨으로 인해 증가된 금액으로 표시되어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규모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문제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신규사업을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¹⁶⁾ 이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을 알기 어렵게 됨.

- 또한, 각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들이 통·폐합되면서 각 사업들의 과거 예산투입규모, 결산내역, 사업추진 성과 등 사업이력의 추적이 어렵게 되고, 각 사업들의 사업목표가 다르므로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의 설정도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16) 2025년도 예산안에도 ‘현충시설건립세부사업’내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건립 등 3개 내역사업,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세부사업’내에 여가활동지원,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 등 2개 내역사업을 신규로 편성함.

Ⅱ. 보훈기금

1.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88골프장 매각 계획 구체화 이후 매각대금 수입 계상 필요

가.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기타 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와 수입 등을 계상하는 항목으로,¹⁷⁾ 2025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72억 4,700만원(5.8%) 증가한 1,32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보훈기금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항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0,749	124,753	132,000	7,247	5.8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88골프장 매각대금을 해마다 보훈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면서도 실제로 매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금 수입의 과다계상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명확한 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7) 항목명: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 이 항목의 2024년 계획안 1,320억원은 전액 88골프장 매각대금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체 매각대금 예상액 3,727억원을 3개년 분할 계상한 것임.
- 그런데 88골프장 매각대금을 해마다 보훈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면서도 실제로 매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금 수입의 과다계상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임.
- 동 항목의 최근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수입 계획액 1,320억원 중 50억 9,600만원(수납률 3.9%)이 수납되는데 그쳤으며, 2023년에도 계획액 1,190억원 중 107억 4,900만원(수납률 9.1%)이 수납되었음.

<최근연도 보훈기금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결산>

구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2022년	132,000	5,096	5,096	3.9
2023년	118,000	10,749	10,749	9.1
2024년(10월)	124,753	0	0	0
2025년(안)	132,000	-	-	-

주: 2022년부터 기타재산수입(54-545) 목이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및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목으로 분리

자료: 국가보훈부

- 특히, 2023년까지 일부 수납이 발생했던 수입은 기금의 중장기 여유자금 수익금이었으며, 2024년부터는 여유자금 수익금을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에 계상¹⁸⁾함에 따라 본 항목에 대한 수납이 전

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내년 수입 계획안으로 재차 큰 규모의 금액(1,320억원)이 계상되었음.

□ 정부가 이와 같이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매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기금운용계획에 대규모 매각수입을 해마다 반영한 채 국회에 제출하여,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을 왜곡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정한 편성 사례로 볼 수 있음.

○ 국회는 2020년 결산 심사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사한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

<88골프장 매각대금 수입계상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

대상연도	지적요지	시정요구사항
2020결산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현재까지 88골프장 매각계획이 유지되고 있어 전년도 골프장 매각대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년 수입을 편성하고 있으나, 사실상 골프장 매각이 추진되지 않아 실제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사업자금만 회수하고 있어 매년 계획액 대비 수납 실적이 매우 저조함 ○ 기금 수입의 과다계상은 실제 운용규모에 비해 기금의 추가 지출 여력이 없음에도 기금운용 규모를 과도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	○ 국가보훈처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88골프장 매각 여부를 조속히 결정짓고, 최근 회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수입계획을 편성하여 국가재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

자료 :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발췌

18) 보훈기금 중장기여유자금 운용방식인 완전위탁펀드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재정당국이 권고함에 따라, 보유중인 연기금투자펀드 내 자산은 모두 유동자산으로 변경되어 현재 여유자금 수익금은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음.

- 보훈기금 2025년 지출 계획안은 골프장 위탁운영(2362-434) 사업에 176억 4,300만원, 골프장 시설투자(2362-435) 사업에 40억 7,70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는데, 골프장 매각대금을 수입에 반복적으로 계상하면서 골프장 운영비 및 시설투자 예산 편성을 병행하는 비합리적 편성을 지속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국가보훈부와 재정당국의 입장 차이¹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명확한 방향성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선행한 후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임.
-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운영 수입이 보훈기금의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안정적인 기금 조성²⁰⁾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 골프장은 국가유공자 정지연금²¹⁾으로 건설하여 보훈단체들이 보훈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어 매각 시 큰 반발이 예상된다는 입장임.

19) 국가보훈부는 국회의 반복적인 지적 등에 따라 재정당국에 매년 기금운용계획에서 88골프장 매각대금 계상 제의를 협의하였으나 미반영되고 있다고 밝힘.

20) 2022년 141억원, 2023년 140억원

21) 국가유공자 등이 취업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정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2.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리적 예산 책정 필요

가.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은 고령 보훈대상자에 대해 재가보훈
실무관 등 돌봄인력 및 활동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
로,²²⁾ 2025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2억 7,600만원(△7.6%) 감소한
397억 7,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결산	(A)	계획안(B)	(B-A)	(B-A)/A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40,627	43,047	39,771	△3,276	△7.6
· 공무원등 인건비	37,946	39,744	35,450	△4,294	△10.8
· 재가복지지원	1,805	2,400	2,385	△15	△0.6
· 노인생활지원용품	876	903	903	-	-
· 재가복지 민간위탁	-	-	557	557	순증
· 여가활동 지원	-	-	300	300	순증
· 법률구조지원	-	-	176	176	순증

주) ‘여가활동지원’과 ‘법률구조지원’은 2024년까지 ‘기타복지지원(2160-442)’ 세부사업에 편성되었으나, 2025년
예산안부터 본 세부사업으로 통합됨.(내역사업별 편성액은 2024년과 동일)

자료: 국가보훈부

22) 세부사업: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2160-441)

나. 검토의견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전환이 보훈복지의 위축 및 사각지대 확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은 65세 이상의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의 가정에 재가보훈실무관을 파견하여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가보훈실무관 및 사회복지사 등 공무원 근로자 인건비 비중이 계획안의 89.1%(354억 5,000만원)임.

-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2007년에는 보훈복지사 15명, 재가보훈실무관 250명이 배치되었는데, 점진적으로 인력이 증원되어 2018년 이후로는 보훈복지사 72명, 재가보훈실무관 1,349명이 사업을 수행하다가, 2023년부터는 재가보훈실무관 인력을 감축²³⁾하는 추세임.

<재가보훈실무관 업무>

- ①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② 서비스대상자의 노화, 질병 및 장애 상태와 복지환경 등에 관해 기록 및 사회복지사에게 보고
- ③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수요 파악, 전달, 실태점검
- ④ 보훈(지)청장 등의 지시사항이나 사회복지사가 수립한 서비스 계획 이행
- ⑤ 그 밖에 장관 또는 보훈(지)청장이 정한 직무 범위

○ 재가보훈실무관 인력은 2018년 1,349명에서 2023년 1,219명, 2024

23) 장기요양(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및 사망 등으로 인한 보훈재가복지대상자 감소에 따라 재가보훈실무관 인력 감축

년 1,036명으로 감원되었고, 2025년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150명 추가 감소한 886명을 운영할 계획이 반영됨.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 보훈인력 변동 현황>

구분	인원 수 변동 현황
보훈복지사	15명('07) → 30명('08) → 40명('10) → 50명('13) → 67명('15) → 70명('17) → 72명('18)
재가보훈 실무관	250명('07) → 600명('08) → 1,000명('09) → 1,100명('13) → 1,326명('15) → 1,349명('18) → 1,219명('23) → 1,036명('24) → 886명('25계획안)

자료: 국가보훈부

- 그리고 이러한 인력 감축과 연계하여,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재가복지 민간위탁’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5억 5,7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함.
- ‘재가복지 민간위탁’ 내역사업은 재가보훈실무관 배치가 곤란한 원거리, 시외지 거주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편성됨.
- 국가보훈부는 일부 재가복지 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재가보훈실무관 노동조합이 원거리 배치 지양 및 대중교통 취약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함.
- 그런데, 2025년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복지사각지

대 해소라는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2025년 계획안에 반영된 재가보훈실무관(886명)의 기본급 및 제수당은 1인당 3,023만원 수준이나, 원거리 및 도서지역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전환대상 민간인력 139명에 대해서는 인력 1인당 4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함.
- 인력 1인당 400만원의 사업비는 주 2회, 회당 2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여 주당 약 8만원(시간당 약 2만원)을 지급액으로 산출하였음.

〈‘재가복지 민간위탁’ 계획안 산출 단가〉

구분	내용
민간위탁비용 산출 단가	40,280원(2시간) × 주2회 × 49주 + 배상책임보험료

자료: 국가보훈부

-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취약하여 재가보훈실무관의 복지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전환을 하면서, 재가보훈실무관 인력 운영 예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계획안을 책정한 것은 민간위탁 사업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재가보훈실무관의 자격 요건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민간위탁 시에도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해당 예산이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인지, 낮은 급여로 인해 부실한 서비스가 제공될 여지는 없을 것인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전환이 최근연도에 지속된 재가보훈실무관 인력 감축과 함께 보훈복지의 위축 및 사각지대 확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금융위원회 소관 】

I. 신용보증기금

1. 기타경상이전수입²⁴⁾: 팩토링 매출채권의 자금 회전기간을 고려하여 감액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구상채권 회수금, 선급법인세 환수, 공탁금반환 등 각종 반환금 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226억 5,800만원(16.1%)이 증가한 8,839억 8,3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기타경상이전수입	669,170	761,325	761,325	883,983	122,658	16.1
-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73,225	149,456	149,456	198,470	49,014	32.8

(자료: 금융위원회)

-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는 매출채권 만기일에 팩토링²⁵⁾ 매출채권 구매기업으로부터의 대금 회수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90억 1,400만원(32.8%)이 증가한 1,984억 7,000만원이 편성됨.

24)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25) <팩토링 서비스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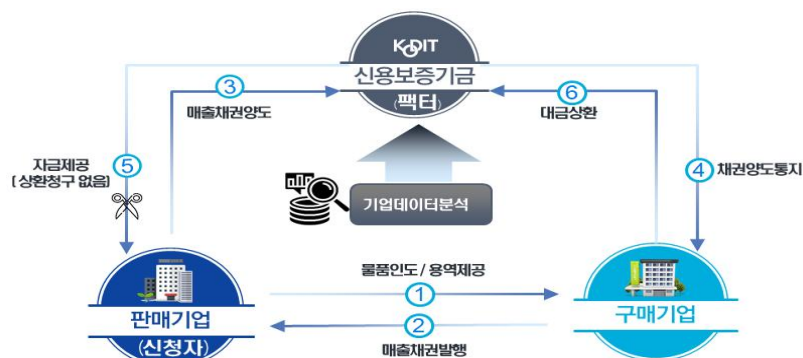
<팩토링금융 지원 요건>

구분	구매기업	판매기업
대상채권	결제기일이 30~90일인 매출채권	
대상기업	신용등급 보통 이상인 상장법인 또는 외부감사의견 '적정' 등급 중소·중견기업	구매기업과 6개월 이상 거래 중인 중소·중견기업
매입한도	최고 50억원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한도 상이)	최고 100억원 (매출액 규모별, 구매기업 신용도별 한도 상이)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팩토링 매출채권 결제기일 소요에 따른 회수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반영
하여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수입계획안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팩토링금융’ 사업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
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신용보증기금)

- 2025년도 ‘팩토링금융’ 사업 지출계획안 중 매출채권 매입액은 1회 매출채권 매입규모 500억원을 4회전하는 것을 전제로 2,000억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의 대금 회수분 1,984억 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계획안>

수입계획안	지출계획안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팩토링금융 매출채권 상환 1,984억 7,000만원	팩토링금융(2431-314) 2,001억 6,000만원
팩토링 운용(2,000억원) - (500억원× 3.06%(예상 年부실률)	매출채권 매입 2,000억원[=500억원(1회 매입액)×4회전(평균 만기 90일 기준)] + 사업운영비 1억 6,000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최근 3년(2021~2023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팩토링금융 매출채권 상환’ 항목의 계획액 대비 수납률을 보면, 2021년 34.2%, 2022년 72.8%, 2023년 73.7%로 매년 저조함.²⁶⁾

<연도별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2021년	39,750	13,592	13,592	34.2
2022년	79,500	57,890	57,890	72.8
2023년	99,375	73,225	73,225	73.7
2024.8월말	149,456	87,027	87,027	58.2

(자료: 금융위원회)

26) 2021년의 경우 사업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2022~2023년에 비해 수납률이 낮음.

□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는 팩토링 매출채권의 평균 결제기일이 69일로 매입 채권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회수되기 때문으로, 부실액·사고 발생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전액이 만기 미도래액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수입계획안 편성 시 자금 회전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예상 채권 회수액을 산정함에 따라 매년 수입계획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매년 팩토링 공급금액이 동일할 경우 자금 회전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수입계획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나, 최근 팩토링 공급금액이 증가 추세임²⁷⁾에 따라 매년 만기미도래 채권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점에서 반복적으로 수입결손이 나타나고 있음.

- 2025년에도 팩토링금융 매출채권을 2,000억원 매입할 계획인바 전년(1,500억원) 대비 공급계획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만기미도래 채권이 상당규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수입추계 시 이를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수입계획안이 실제 수납가능액에 비해 과다 추계되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반영하여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수입계획안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²⁸⁾

27) 팩토링금융 지원규모: ('21년) 202억원, ('22년) 596억원, ('23년) 900억원, ('24년e) 1,500억원, ('25년e) 2,000억원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 “금융위원회는 차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편성 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반영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제도개선)”이 의결된 바 있음.

28)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수입계획액 산식 변경을 검토하여 계획액과 실제 수납액 간 차이를 줄이고 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함.

<2025년도 수입계획안 산식 변경(안)>

(정부안) 수입계획액(연간) 198,470백만원 = {예산액(연간) × 4회전(결제기일 90일^{주)}} × (1-부실률/4회전) (변경안) 수입계획액(연간) 186,066백만원 = {예산액(연간) × 4회전(결제기일 90일^{주)}} × 0.75(기중 만기도래 채권비율) + 전기 만기도래 채권 예상액} × (1-부실률/4회전)
--

주) 업체의 자금 사정에 따라 결제기일과 자금 집행 시기는 매년 변동되고, 결제기일 단축 운용 시 업체 상환 부담 우려가 있어 최장 결제기일인 90일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2. 대환보증 대위변제²⁹⁾: 저조한 대환보증 공급실적을 고려하여 감액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대환보증 대위변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보증부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응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594억 8,500만원(180.6%) 증가한 7,139억 2,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대환보증 대위변제	24,788	254,436	254,436	713,921	459,485	180.6

(자료: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2022년 9월 말 사업이 개시되어 2024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신용보증기금은 9조 5,000억원 공급목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에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6,800억원, 2023년도 본예산으로 800억원의 출연을 받았고, 대환보증 대위변제 지출계획액(안)을 2023년부터 편성하고 있음.³⁰⁾

29) 세부사업: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

30) <소상공인 대환보증 추진을 위한 출연금 편성내역>

구분	2022년도 제2회 추경	2023년도 예산
출연금	6,800억원	800억원
산출근거	8조 5,000억원÷12.5배	1조원÷12.5배

(자료: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당초	2023.3월	2023.8월	2024.3월
지원대상	<u>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u>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u>전체</u>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환대상 채무	'22. 5. 31.까지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u>'22. 5. 31.까지</u>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및 <u>사업목적 가계대출</u>	<u>'23. 5. 31.까지</u>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및 <u>사업목적 가계대출</u>
접수기한	2023년 말	2024년 말		
총량한도	8.5조원	9.5조원		
상환구조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10년(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개인기업) 5천만원, (법인기업) 1억원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보증료율	연 1% 고정보증료율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최초 1년간 보증료 0.7% 추가 감면 (은행 출연)
보증비율	90%			
보증방식	위탁보증(15개 은행에 업무 위탁)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iM뱅크(舊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2024년 말까지의 보증공급목표(9조 5,000억원) 중 8월 말 기준 16.2%만을 공급하여 실적이 부진한데, 그럼에도 대환보증 대위변제 계획안이 공급목표를 전액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다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음.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대위변제액 7,139억원은 '2024년 말 부실잔액'과 '2025년 부실순증액'의 합에 '대위변제발생률'을 곱하여 산정한 것임.

○ 이중 '2025년 부실순증액'은 사업 시작 이후 연도별 보증공급액에 예상부실률³¹⁾을 곱한 값이므로, 대환보증 대위변제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증공급 실적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계획안 산정내역>

○ 2025년도 예상 대위변제액 7,139억원
= [①'24년말 부실잔액(782억원) + ②'25년 부실순증액(9,328억원)] × (구)위탁보증 대위변제 발생률 5년 누계값(70.61%)
- ① '24년말 부실잔액(782억원) = ['23년말 부실잔액(362억원) + '24년 부실순증액(2,205억원)] - '24년 대위변제해지액(1,785억원)
- ② '25년 부실순증액(9,328억원)
= '22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부실금액(190억원 = 2,321억원 × 8.18%)
+ '23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부실금액(962억원 = 9,333억원 × 10.31%)
+ '24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 부실금액(8,176억원 = 8조 3,346억원 × 9.81%)

(자료: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계획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9조 5,000억 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공급실적을 보면, 2023년 말 기준 보증공급 누계액은 1조 1,654억원으로, 공급목표(9조 5,000억원) 대비 12.3%에 불과함.

31) 실제 부실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운용기간이 필요한데, 현재는 사업초기이므로, 일반보증 중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공급 후 N년 시점의 예상부실률을 산정하고 있음.

<연도별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공급목표 (누계)	대환보증 공급실적	대환보증 공급실적 (누계)	공급목표 대비 실적 (누계)	향후 공급가능액 (누계)
2022년 ~ 2023년	9,500,000	1,165,373	1,165,373	12.3%	8,334,627
2024년 8월기준	(2024년 말까지)	370,435	1,535,808	16.2%	7,964,192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그런데, 2025년도 사업 계획안은 총 공급목표(9조 5,000억원)에서 2023년 말까지의 대환보증 누적 공급액(1조 1,654억원)을 제한 8조 3,346억원을 전액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25년 부실순증액(9,328억원)을 산출하였음.

○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보증공급액 평균치를 기준으로 할 때 동 실적이 연말까지 지속되더라도 2024년에는 약 5,557억원³²⁾ 공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2025년도 부실순증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임.

<2024년 보증공급 규모에 따른 예상 대위변제액 변화>

8조 3,346억원 보증공급	5,557억원 보증공급 (가정)
○ 예상 대위변제 발생액 7,139억원 = [①'24년말 부실잔액(782억원) + ②'25년 부실순증액(9,328억원)] × (구)위탁보증 대위변제 발생률 5년 누계값 (70.61%) - ①'24년말 부실잔액(782억원)	○ 예상 대위변제 발생액 1,750억원 = [①'24년말 부실잔액(782억원) + ②'25년 부실순증액(1,697억원)] × (구)위탁보증 대위변제 발생률 5년 누계값 (70.61%) - ①'24년말 부실잔액(782억원)

32) 2024년 예상 대환보증 공급액 5,557억원 =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보증공급액 3,704억원) ÷ 8개월 × 12개월

- ②'25년 부실순증액(9,328억원) = '22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부실금액(190억원 = 2,321억원 × 8.18%) + '23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부실금액(962억원 = 9,333억원 × 10.31%) + '24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 부실금액(8,176억원 = 8조 3,346억원 × 9.81%)	- ②'25년 부실순증액(1,697억원) = '22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부실금액(190억원 = 2,321억원 × 8.18%) + '23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부실금액(962억원 = 9,333억원 × 10.31%) + '24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 부실금액(545억원 = 5,557억원 × 9.81%)
--	---

○ 2024년도 보증공급액을 5,557억원으로 반영할 경우, 2025년 부실순증액은 1,697억원이며, 최종 2025년도 예상 대위변제액은 1,750억원으로 산정되므로, 2025년도 계획안의 7,139억원과 5,389억원의 차이가 발생함.

□ 보증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유사 대환프로그램을 출시하여 대환대출의 수요가 분산되었고, 당초 사업구조상 짧은 상환기간(거치기간 2년 도과 시 3년간 분할상환)에 대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함.

- 신용보증기금도 대환보증의 저조한 공급실적을 고려하여 2025년 상반기 중 저금리 대환보증 계정의 여유재원을 소상공인위탁보증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어 대환보증의 공급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저조한 보증실적을 고려하여 대환보증 대위변제 계획안을 약 5,000억원 감액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로, 2023년에도 대환보증 대위변제 계획액을 과다편성한 후 공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타 사업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 감액하였고, 그럼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 동 사업에 대해 과다한 수준의 공급계획 수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³³⁾이 의결되었음.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당초(A)	증감액	수정				
2023년	222,731	△120,600	103,131	103,131	24,788	11.1	78,343
2024.7월 말	254,436	-	254,436	254,436	64,495	25.3	-

(자료: 금융위원회)

33)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수요와 지원 요건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과다한 수준의 공급계획 수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주의)

3. 업무용건물³⁴⁾: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사업지연 방지 및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업무용건물”은 신용보증기금의 영업점포를 취득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소요비용 또는 소유건물에 대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3억 9,400만원(20.1%) 증가한 142억 9,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업무용건물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업무용건물	4,707	11,900	11,900	14,294	2,394	20.1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은 사무실(60개), 연수지원센터(3개) 및 합숙소(17개) 등 총 80개의 업무용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 2025년도 계획안은 광진지점 대수선 추가 공사비 52억 5,000만원, 스타트업 지원 공간 13억 3,400만원, 자가점포 취득 56억 1,000만원, 지방점포 직원합숙소 취득에 21억원이 편성되었음.

34) 세부사업: 업무용건물(2431-305)

- 그중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는 광진지점(서울 광진구 소재)의 건물³⁵⁾이 1992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하는 대수선 공사비용으로, 2024년에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2025년에 추가 공사비가 반영된 것임.³⁶⁾

35) <광진지점 건물 현황>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20(구의동)	지하철역 도보 18분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6층	1~4층 업무시설
신축일	1992.12.21.	31년 경과
대지면적	2,154.40m ² (652평)	공시지가: 약186억원
연면적	8,284.65m ² (2,506평)	(자료: 신용보증기금)

36)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내용>

구 분	공사 前		공사 後		증축 등*
옥탑	물탱크실		창고		42.52㎡
6층	공조기실, 기계실, 옥상정원		회의실, 미화원휴게실, 옥상정원		70.96㎡
5층	농구장(제외)	샤워실, 휴게실	농구장(제외)	다목적 로비	38.81㎡
4층	이행전담팀, 임금피크직원		업무시설		38.81㎡
3층	동부채권관리단		업무시설		44.15㎡
2층	광진지점		로비 (신설)	업무시설	△16.32㎡
1층	기업은행, 동부신용보험1센터			업무시설	66.38㎡
지하1층	주차 25대		주차 27대		13.79㎡
지하2층	주차 16대	전기실, 기계실	주차 18대	전기실, 기계실	8.43㎡
연면적	8,284.65㎡ (2,506평)		8,265.51㎡ (2,500평)		총 307.53㎡
엘리베이터	1대		2대		1대 추가
주차대수	지하41대, 지상4대		지하45대(전기차 2대 포함)		차단기설치
비고	▪ 외장재 전면교체(기존 커튼월 존치) 및 일부 증축 ▪ 엘리베이터 1대 신설, 기존 기계, 전기, 통신, 소방시설 전면 교체 등				

주) 증축 및 건축용도 변경을 통해 실제 사용가능 면적 증가

(자료: 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사업지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사업은 2024년에 설계부터 준공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설계비 3억 3,000만원, 공사비 52억 6,800만원, 감리비 2억 6,400만원 등 6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2024년 8월 말 기준 계획현액 60억원 중 집행률이 3.6%(2억 1,700만원)에 불과함.

<2024년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¹⁾	집행률 (B/A)	계획안
	당초	수정				
기본조사설계비(420-01)	66	66	66	10	15.2	29
실시설계비(420-02)	264	264	264	205	77.7	364
공사비(420-03)	5,268	5,268	5,268	-	0.0	4,609
감리비(420-04)	264	264	264	-	0.0	130
시설부대비(420-05)	138	138	138	2	1.4	118
주 1) 집행액은 2024년 8월 말 기준	6,000	6,000	6,000	217	3.6	5,250

(자료: 신용보증기금)

- 추진경과를 보면, 공사범위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24년 4월에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려던 계획과 달리 인·허가 절차가 8월까지 진행되었고, 10월 초 기준 아직 시공사 선정 중으로 착공하지 못한 상황임.

-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도 계획안 편성 시 공사기간을 8개월로 설정하였으나, 연도 중 공사기간을 14개월로 연장하여 2024년 10월에 착공, 2025년 12월에 준공하고자 계획을 변경하였음.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24.9월 기준)>

구분	세부내용	당초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및 공사비 추정	'24.1월	'23.12월
설계공모	■ 제안공모 및 선정(심사위)	'24.1월	(공모)'24.1월 (선정)'24.2월
실시설계용역 인·허가	■ 실시설계 ■ 인·허가(경관심의 포함)	'24.2월 ~ 4월	'24.2월 ~ 8월
공사입찰 및 계약	■ 시공사 선정(입찰)	'24.5월	'24.9월
착공	■ 착공신고 및 구조물 철거	'24.5월	'24.10월
시공	■ 공종별 공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폐)	'24.5월 ~ '24.12월	'24.10월 ~ '25.11월
준공	■ 사용승인 및 세금납부	'24.12월	'25.12월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에 더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안전 관련 법령 강화로 안전관련 필수 공사가 증가했고, 건물 노후화로 내진보강 지하 저수조, 급·배수펌프 등 주요 설비의 전면 교체가 필요했으며, 건설 자재비 상승, 서울시 경관심의·광진구 건축허가 진행 과정에서의 요청³⁷⁾ 등에 따라 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2025년에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총사업비를 52억 5,000만원 증액하였음.

37) 재료의 안정성 보장, 교통약자 편의시설·안전시설 등을 추가하도록 공사계획이 변경되었고, 도시기반시설 이설(광진구청 요청에 따른 배수관 조정) 및 신설(관할 경찰서 요청에 따른 인도 신설) 등

○ 2025년도 계획안 52억 5,000만원은 설계비 3억 9,300만원, 공사비 46억 900만원, 감리비 1억 3,000만원 및 부대비용 1억 1,8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2024년에는 기존 노후시설 해체 및 철거, 외장재 전면 교체, 기존 노후설비 철거 및 교체를 진행하고, 2025년에는 안전 난간, 계단 등 안전시설 공사,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및 마감공사, 구조보강 등을 진행할 계획임.

<2024·2025년도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소요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① 기재정 (‘24년 예산)	② 추가공사 (‘25년 예산안)	총예산 (① + ②)	추가공사금액 산출근거
설계비	330	393	723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 (기본조사) 실시설계비용 × 8% • (실시설계) 설계비*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료**의 합 * 공사금액 4,148백만원(부가세 제외) × 5.2766% × 1.5(리모델링) × 1.1(부가세) = 362백만원 ** 설계비 328백만원(부가세 제외) × 0.492% (보험요율) = 2백만원
기본조 사	66	29	95	
실시설 계	264	364	628	
순공사비	5,268	4,609	9,877	총공사비의 87.8%
감리비	264	130	394	• 건축/전기/소방 감리 95백만원 • 설계의도 구현비 35백만원
부대비용	138	118	256	• 대수선공사 취득세(113)*, 기타경비(5) * 5,132백만원 × 2.2%(세율) = 113백만원
총공사비	6,000	5,250	11,250	

(자료: 신용보증기금)

□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편성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먼저,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도 계획안 제출 시 2024년 9월 중 시공사를 선정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중 3개월간 공사하는 것을 전제로 총 공사비(98억 7,700만원)의 약 21.3%(=3개월÷1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21억 700만원)을 2024년에 집행하고, 잔여분(77억 7,000만원)을 2025년에 집행하도록 잔여 공사비 전액을 편성하였음.³⁸⁾

- 그러나 해당 계획과 달리 10월 7일 기준 계약이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외에는 건축공사·소방공사는 입찰 진행 중이고, 전기공사·통신공사는 입찰 준비 중으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어 변경계획에 비해서도 착공이 추가로 지연됨에 따라 2024년 중 3개월의 공사기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에 구조보강 및 방수공사, 각종 안전시설 공사 등 확대되는 공사범위에 대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재추진하고 건축허가 변경을 실시할 예정이나, 실시설계 절차 및 이에 따른 기존 설계 변경 시의 인·허가 절차가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공사기간이 재차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사업지연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38) 2025년도 공사비 예산안 46억 900만원 = 총 공사비 98억 7,700만원 - 2024년으로부터의 이월예상액 31억 6,100만원*

* 이월예상액 31억 6,100만원 = 2024년 공사비 예산액 52억 6,800만원 - 2024년 연말까지 집행예상액 21억 700만원(=총 공사비 98억 7,700만원×3개월÷21개월)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프론트원 운영³⁹⁾: 연례적 불용을 고려한 감액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프론트원 운영”은 청년 창업 보육공간인 프론트원(FRONT1) 건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청년창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4,000만원(5.1%) 증가한 70억 6,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프론트원 운영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프론트원 운영	5,569	6,720	6,720	7,060	340	5.1

(자료: 금융위원회)

- 프론트원은 민간 주도의 개방형 창업생태계를 표방하는 청년창업 기업 전문 보육공간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마포사옥⁴⁰⁾ 리모델링(2018년~2020년)을 통해 조성되어 2020년 7월 개관하였으며 입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금융·네트워크·컨설팅·해외진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이 제공됨.

- 프론트원의 운영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⁴¹⁾(이하 “디캠프”)과 신용

39) 세부사업: 프론트원 운영(2431-312)

40) 신용보증기금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의해 2014년 12월에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면서 마포사옥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15회나 유찰이 되는 등 매각이 장기 지연됨에 따라 사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포사옥 리모델링이 추진됨. 정부는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마포사옥을 마포 청년혁신타운으로 전환하여 200-300개의 청년 기업과 정책금융기관 등의 입주를 통한 창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마포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 2018.4.16.

보증기금이 공동 관리기관이 되고, 실제 운영은 디캠프 및 각 입주 전문기관이 맡는 체계로 구성됨.

- 디캠프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3개층)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스퀘어(2개층)을 제외한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프론트윈의 운영을 총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스타트업에 창업 공간 제공, 건물 유지·보수, 공공요금·세금 납부 및 보안·통신 관리 등 건물 관리를 맡고 있음.

2) 검토의견

프론트윈 운영 사업은 실소요액에 비해 과다편성됨에 따라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전년 대비 증액되었으므로 계획안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 프론트윈 운영 사업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결산내역을 보면, 연례적으로 계획액 대비 불용률이 14.7%(6억 2,000만원), 16.7%(10억 9,700만원), 15.9%(10억 5,100만원)으로 높게 나타났음.

- 2022년과 2023년의 불용액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관리용역비(210-15목)의 경우 각각 3억 3,900만원, 2억 9,5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의 경우 7억 200만원, 4억 4,900만원이었음.

41)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청년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은행연합회의 20개 회원 금융기관이 총 5,000억원을 출연하여 2012년 설립한 비영리재단임.

<최근 3년간 프론트원 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비목)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A)	수정					
2021년	4,219	4,219	4,219	3,599	-	620	85.3
210-14	1,678	1,697	1,697	1,542	-	155	91.9
210-02	1,732	1,654	1,654	1,240	-	414	71.6
210-09	600	610	610	598	-	12	99.7
210-01	119	158	158	142	-	16	119.3
210-15	90	100	100	77	-	23	85.6
2022년	6,568	6,568	6,568	5,471	-	1,097	83.3
210-15	3,163	3,273	3,273	2,934	-	339	92.8
210-02	2,281	2,382	2,382	1,680	-	702	73.7
210-09	900	660	660	650	-	10	72.2
210-01	224	253	253	207	-	46	92.4
2023년	6,620	6,620	6,620	5,569	-	1,051	84.1
210-15	3,215	3,266	3,266	2,971	-	295	92.4
210-02	2,281	2,281	2,281	1,832	-	449	55.8
210-09	900	806	806	550	-	256	61.1
210-01	224	267	267	216	-	51	96.4

주: 관리용역비(210-15목)는 2021년에 일반용역비(210-14목)와 관리용역비(210-15목)로 나누어 편성되었음.

(자료: 금융위원회)

□ 이처럼 프론트원 운영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실제 소요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액이 매년 과다편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실제로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관리용역비의 경우 2022년에 31억 6,300만원, 2023년에 32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입찰공고

서 기준 발주금액이 2022년 29억 3,500만원, 2023년 29억 5,400만원
으로 계획액에 비해 발주금액 자체가 매년 낮음.

- 그럼에도 신용보증기금은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을 전년 대비
3억 4,000만원(5.1%) 증액한 7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보임.

<프론트원 운영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도 계획액(A)	2025년도 계획액(B)	B-A	(B-A)/A
관리용역비 (210-15)	3,294	3,444	150	4.6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282	2,422	140	6.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900	900	-	0.0
일반수용비 (210-01)	244	294	50	20.5
계	6,720	7,060	340	5.1

(자료: 금융위원회)

- 특히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중 가스료는 전년 대비 4,100만원
(18.4%) 증액된 2억 6,400만원, 관리용역비(210-15목)는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4.6%) 증액된 34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융
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가
스료 및 관리용역비의 증액분은 2024년도 예산액에 예상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것임.

- 그런데 2025년도 계획안 산출 시 적용된 예상 물가상승률이 세부 항목별로 편차(5%~20%)가 나타나고, 2024년도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2024년 9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1.6%)에 비해 높게 설정되는 등 예산안 산출이 면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획안 산출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²⁾

<프론트원 운영 사업 2025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일부>

□ 공공요금 및 제세 2,422백만원

- 전력수도료(985) : 821백만원(24년 소요예산) × 1.2배(단가상승, 인원증가 등 반영)
- 종합부동산세(504) : '25년 별도합산토지 중부세 예상액(2,100) × 토지 공시지가 비중(24%)
- 재산세 건물분(113) : '24년 건물 재산세 부과액(103) × 예상 연평균 시가표준 상승률(10%)
- 재산세 토지분(379) : '24년 토지 재산세 부과액(345) × 예상 연평균 시가표준 상승률(10%)
- 간주임대료 부가세(79) : 보증금(20,649) × 이자율(3.5%) × 세율(10%) × 추가임대 협의에 따른 증가 버퍼(1.1)
- 가스료(264) : 220백만원('24년 소요예산) × 예상 물가 상승률 반영(1.2)
- 기타(98) : 통신비(23) + 교통유발부담금(75)

□ 관리용역비 3,444백만원

- 건물종합관리(3,290) : 3,133백만원('24년 소요예산) × 예상 물가 상승률 반영(1.05)
- 기타 환경·시설유지 등(78) : 71백만원('24년 소요예산) × 예상 물가 상승률 반영(1.1)
- 각종 검사용역(76) : 72백만원('24년 소요예산) × 예상 물가 상승률 반영(1.05)

* 물탱크·정화조 청소, 실내공기질 검사 등 법정검사 및 점검료(자료: 금융위원회)

42)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프론트원 건물의 시설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어 실제 물가상승분에 더하여 추가적인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하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필요할 경우 물가상승분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예산안 산출 시 그 세부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리용역비와 공공요금및제세의 경우 매년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프론트윈 운영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년 대비 계획안이 증액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실소요액에 기반하여 예산이 산출되도록 감액할 필요가 있음.

Ⅱ.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 담보설정비용(주연보 계정)⁴³⁾: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기한 연장 조기 확정 시 등록면허세 지급분 삭감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담보설정비용”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및 신탁등기 설정(보완등기 포함) 등 담보설정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및 제반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94억 5,000만원(614.0%) 증가한 226억 1,8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담보설정비용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담보설정비용	2,424	3,168	3,168	22,618	19,450	614.0

(자료: 금융위원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가입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를 취득(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신탁등기)하고, 일정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지급받는 보증 사업으로,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라 담보 주택에 대한 등록을 하는 자인 한국주택

43) 세부사업: 담보설정비용(2631-305)

금융공사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⁴⁴⁾

- 그런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 설정 시 등록면허세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게 될 경우,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감소⁴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⁴⁶⁾

□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⁴⁷⁾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은 2007년 7월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법

44)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45) 보증료수입의 현재가치와 예상손실액의 현재가치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월지급금을 책정(수지상등의 원칙)하고 있으며, 등록면허세 부담액은 예상손실액의 현재가치에 추가되어 월지급금이 감소하게 되는 것임.
- 46) 【 등록면허세 부담주체별 월지급금 산출 예시 】 (조건 :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연령 72세, 주택가격 5억원)

구분	가입자 부담 시(현행)	공사 부담 시*	100세말 기준 지급액 차이
월지급금	1,615,010원	1,583,290원	11,038,560원

* 공사 부담 등록면허세 약 208만원[867백만원(근저당권설정액:100세기준 예상주택가격)×0.24%(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율)] 가정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제1호 외의 등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 가.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나.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 참고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연혁>

개정 시행일	등록면허세 (제35조 제1항)	재산세 (제35조 제2항)
출시 직후 (‘07.7월~)	▶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전액 감면 (출시 ~ ‘10.12.31.)	▶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25% 감면 (‘08년 과세 분~‘10.12.31.)
‘11.1.1.*	▶ 전액 감면 (~‘12.12.31.)	▶ 25% 감면 (~‘12.12.31.)
‘13. 1. 1.	▶ 전액 감면 (~‘15.12.31.)	▶ 25% 감면 (~‘15.12.31.)
‘16. 1. 1.	▶ 전액 감면 (~‘17.12.31.) ▶ 75% 감면 (~‘19.12.31.)	▶ 25% 감면 (~‘18.12.31.)
‘20.1.15.	▶ 75% 감면 (~‘21.12.31.)	▶ 25% 감면 (~‘21.12.31.)
‘22. 1.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감면근거를 일원화	▶ 75% 감면 (~‘24.12.31.)	▶ 25% 감면 (~‘24.12.31.)

2) 검토의견

동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일몰기한 연장이 조기에 확정되는 경우 저당권방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급분을 삭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확대 등 장기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저당권 설정방식의 담보설정 비용 195억 3,800만원과 신탁방식의 등록면허세 5,000만원, 법무사 수수료 30억 3,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226억 1,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음.

- 이는 전년도 대비 194억 4,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분의 대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 도과에 대비하여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 설정방식으로 보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195억 3,800만원을 반영한 것임.

<2024년, 2025년 담보설정비용 계획안 산출 내역>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
○ 사업수수료(일반수용비) : 3,168백만원	○ 사업수수료(일반수용비) : 22,618백만원
▪ 신탁방식 등록면허세 : 56백만원 [7,491건(신탁방식 신규 공급건수) + 222건(신탁방식 전환 공급건수)] × 7.2천 원(건당 세액)	▪ 근저당권방식 세액 : 19,538백만원 [8,699건(일반주택 신규 예상건수) × 2.1백만원(일반주택 등록면허세)] + [196건(고가주택 신규 예상건수) × 5.0백만원(고가주택 등록면허세)]
▪ 법무사수수료 : 3,112백만원 16,363건(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이사 + 추가설정 건수) × 190천 원(건당 수수료)	▪ 신탁방식 등록면허세 : 50백만원 [6,958건(신탁방식 신규 공급건수) + 207건(신탁방식 전환 공급건수) × 7천 원(건당세액)]
	▪ 법무사수수료 : 3,030백만원 16,200건(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이사 + 추가설정 건수) × 187천 원(건당 수수료)

(자료: 금융위원회)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은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자가 부담하는 등록면허세의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로 정하고 있어, 일몰기간 연장 등 동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2025년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의 가입자가 부담하던 등록면허세를 부담할 계획임.

○ 다만, 2024년 10월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의 일몰기한
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도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되, 등록면허세의 감면율을 기존 75%에서
50%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입법예고⁴⁸⁾한 상황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등록면허세의 일몰기한이 연장
된다면 저당권방식에 따른 담보설정비용(195억 3,800만원)은 2025
년도에도 불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기금 운용에 있어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등록면허세 감면을 위한 일몰기간의 연장은
201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4차례 이루어졌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몰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설정비용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고, 불용하는 방식으로 동

48) 기간: 2024.9.24.~2024.9.26.

사업을 운영해왔음.

- 따라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 제한법 심사 경과에 따라 일몰기한 연장이 조기에 확정되는 경우 저당권방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급분(195억 3,800만원)을 삭감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 연혁 및 담보설정비용 계획·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9월
감면기간	'10월 제정														
개정연혁 (일몰기한)				'13월 개정			'15.12월 개정			'20.1월 개정			'21.12월 개정		
감면비율	100%			100%			100%			75%			75%		
감면상한액	-			-			-			300만원			225만원		
당초예산*	-	-	-	-	-	-	-	-	-	-	17,028	1,747	23,907	3,427	3,168
감면 반영	-	-	-	-	-	-	-	-	-	-	일몰가정 (12월 확정)	감면	일몰가정 (12월 확정)	감면	감면
결산	-	-	-	-	-	-	-	-	-	-	13	579	2,653	2,424	1,792

* 담보설정비용 예산에는 등록면허세(근저당권 및 신탁), 법무사수수료 등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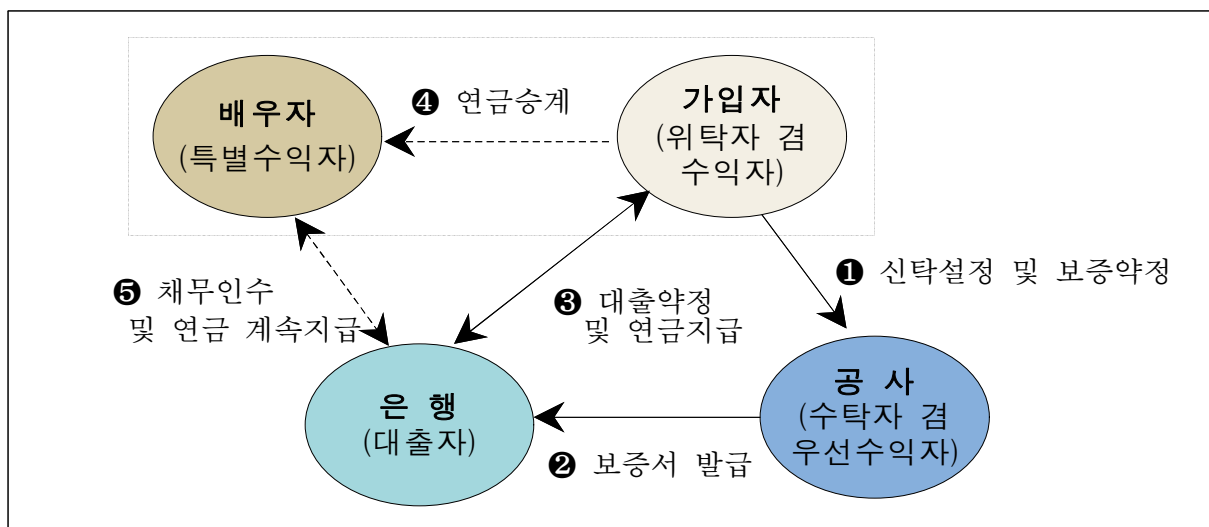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연도마다 등록면허세 관련 금액을 계획안에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연장되면 이를 불용하는 행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확대 등 장기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20.12월)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신탁 방식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주

택연금의 가입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탁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우선수익자)에 주택 소유권을 이전(신탁 등기)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보증하는 방식을 의미함.

<신탁방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구조도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탁방식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 기존의 저당권 설정방식(일반주택: 건당 평균 약 210만원, 고가주택: 건당 500만원)에 비해, 건당 신탁등기 비용(7,200원)이 저렴하여 담보설정비용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음.
- 가입자 입장에서라도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하고,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고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음.

- 재산세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특별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근저당권 방식과 동일하게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주택연금 근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비교>

구분	근저당권방식	신탁방식
의미	▶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 제공 ※ 공부상 소유자는 가입자	▶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주택을 공사(수탁자 겸 우선수익자)에 신탁하여 담보 제공 ※ 공부상 소유자는 공사(정비사업 참여 등이 어려울 수 있음)
배우자의 연금승계	▶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을 시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고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음
임대차 가능여부	▶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채권실행 절차	▶ 절차 복잡, 장기간 소요 (약 8~14개월) ▶ 폐쇄시장에서의 경매	▶ 절차 간편, 단기간 소요 (약 2~6개월 내외) ▶ 일반공개시장에서의 공매
담보해지	▶ 근저당권 말소만으로 해지 가능	▶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종료 절차 진행으로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음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 (등록세) '24년까지 75% 감면 ▶ (재산세) ❶「지방세법」에 따	▶ (등록세) 감면 없음 ▶ (재산세) ❶1가구1주택자 대상 일반감면만 적용되며, ❷주

구분	근저당권방식	신탁방식
	큰 1가구1주택자 대상 일반 감면과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특별감면(~24년) 중 경 감효과 더 큰 1가지만 적용	택연금 가입자 대상 특별감 면은 비적용 ※ 신탁방식에도 특별감면을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 법 개정안 제출 예정(정부)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참고로, 신탁방식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 현황을 보면, 해당
방식이 출시된 2021년 이후 신규가입건수 중 약 40%가 신탁방식으
로 가입하고 있음.

<주택연금 근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비교>

(단위: 명,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합 계
신탁 방 식	신규가입건 수	2,558	6,841	6,396	4,119	19,914
	비중(%)	23.7	46.9	43.0	38.1	39.0
	보증공급액	36,501	124,646	103,379	58,155	322,681
	비중(%)	24.3	49.9	45.9	40.2	41.9
	담보취득방 식 변경건수 (근저당→신탁)	-	266	147	75	488
전 체	신규가입건 수	10,805	14,580	14,885	10,818	51,088
	보증공급액	150,255	249,692	225,016	144,598	769,561

주: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21.6.9), 담보취득방식 변경제도 도입('22.7.11)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Ⅲ.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구상권관리비⁴⁹⁾: 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강화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구상권관리비”는 대위변제 이후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을 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6,100만원(2.5%) 감소한 138억 8,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구상권관리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수정(A)			
구상권관리비	11,371	14,245	14,245	13,884	△361	△2.5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강화 필요

구상채권, 특수채권, 포기채권의 회수실적이 저조하므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및 유류비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2023년도 대위변제액은 4,074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위변제율은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31%로 나타났음.

49) 세부사업: 구상권관리비(2432-302)

<최근 5년(2019~2023년)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증잔액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대위변제액	3,265	3,073	3,021	2,904	4,074
대위변제율	2.03	1.87	1.85	1.69	2.31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구상채권, 특수채권⁵⁰⁾, 포기채권⁵¹⁾ 등의 채권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채권잔액은 전년 대비 1,399억 7,900만원(5.8%) 증가한 2조 5,370억 7,100만원임.

<최근 5년(2019~2023년) 채권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상채권 잔액	1,082,240	1,242,073	1,346,788	1,448,855	1,663,566
증감	173,666	159,833	104,715	102,067	214,711
증감률	19.1	14.8	8.4	7.6	14.8
특수채권 잔액	883,789	772,865	724,510	697,370	662,115
증감	△90,531	△110,924	△48,355	△27,140	△35,255
증감률	△9.3	△12.6	△6.3	△3.7	△5.1
포기채권 잔액	478,914	366,435	289,151	250,867	211,390
증감	△206,155	△112,479	△77,284	△38,284	△39,477
증감률	△30.1	△23.5	△21.1	△13.2	△15.7
합계	2,444,943	2,381,373	2,360,449	2,397,092	2,537,071
증감	△123,020	△63,570	△20,924	36,643	139,979
증감률	△4.8	△2.6	△0.9	1.6	5.8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50) 특수채권 : 구상채권 중 회수 불가로, 상각기준에 따라 상각한 채권

51) 포기채권 :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 경과 등에 따라 회수 포기한 채권

□ 그런데, 채권의 회수액은 202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62억 3,500만원 감소한 711억 4,200만원에 그쳤는데, 이는 농신보가 당초 계획했던 900억원에 크게 미달한 실적일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임.

○ 채권별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구상채권은 전년 대비 98억 7,900만원 (15.7%), 특수채권은 전년 대비 39억 400만원(21.8%), 포기채권은 전년 대비 24억 5,200만원(36.6%) 각각 감소하였음.

<최근 5년(2019~2023년) 채권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상채권 회수	44,789	54,544	71,944	62,782	52,903
증감	894	9,755	17,400	△9,162	△9,879
증감률	2.0	21.8	31.9	△12.7	△15.7
특수채권 회수	26,089	24,776	24,131	17,888	13,984
증감	△6,640	△1,313	△645	△6,243	△3,904
증감률	△20.3	△5.0	△2.6	△25.9	△21.8
포기채권 회수	8,249	9,190	9,035	6,707	4,255
증감	△2,459	941	△155	△2,328	△2,452
증감률	△23.0	11.4	△1.7	△25.8	△36.6
합계	79,127	88,510	105,110	87,377	71,142
증감	△8,205	9,383	16,600	△17,733	△16,235
증감률	△9.4	11.9	18.8	△16.9	△18.6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결과적으로, 채권 잔액 대비 회수율은 2019년 3.2%에서 2021년 4.5%까지 개선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23년에는 2.8%까지 감소하였음.

<최근 5년(2019~2023년) 채권 회수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상채권	4.1	4.4	5.3	4.3	3.2
특수채권	3.0	3.2	3.3	2.6	2.1
포기채권	1.7	2.5	3.1	2.7	2.0
합 계	3.2	3.7	4.5	3.6	2.8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러한 채권 회수실적 부진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라 자산 대비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영활동 및 보유자산 처분 등을 통해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무자력 법인채무자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최근 5년(2019~2024년) 무자력 법인채무자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수	1,680	1,635	1,813	2,064	2,334
금액	2,736	2,627	3,028	3,558	4,130

주: 회생, 파산, 새출발기금 신청 및 경영실패자 연대보증 면제 법인 구상채무자를 모두 포함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그러나, 농신보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12.5배)를 매년 초과하는 등 기금 건전성 악화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농신보의 건전성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고, 2025년 수입계획안에 재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500억원을 반영⁵²⁾하였다

52) 수입과목: 기타특별회계전입금(91-912)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의 건전성 제고 및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보증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 회수실적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본재산(A)	15,306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보증잔액(B)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운용배수(B/A)	9.7	15.4	16.7	15.2	14.6	16.8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그러므로, 농신보는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의 공급을 위해 채권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구상권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IV. 공적자금상환기금

1. 재고자산매각대⁵³⁾: 면밀한 주식 매각계획 수립 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계획안 편성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재고자산매각대”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2013.2.)에 따라 현물로 반환받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주식의 매각대금 수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11억 9,100만원(△37.2%) 감소한 189억 800만원임.

<2025년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재고자산매각대	534	30,099	30,099	18,908	△11,191	△37.2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면밀한 주식 매각계획 수립 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계획안 편성 필요

금융위원회는 면밀한 주식 매각계획 수립 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을 계상하고, 향후 한화오션 주식의 거래가격 및 변동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최적 매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53) 세부사업: 재고자산매각대(73-731)

□ 2013년 2월 부실채권정리기금⁵⁴⁾이 청산되면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주식 약 3,283만주(지분 17.15%)를 현물로 반환받았는데, 이후 일부 매각, 주식병합 및 유상증자 등을 거치면서 현재는 약 233만주(지분 0.76%)를 보유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주식 보유규모 변동현황 >

시 기	변동 사유	보유주식수(주)	지분비율(%)
'13.02.22.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32,825,316	17.15
'13.11.20.	블록세일 (매각규모 : 지분율 5%, 3,402억원)	23,255,778	12.15
'15.12.23.	유상증자		8.50
'16.12.29.	주식병합(10:1), 유상증자	2,325,577	3.55
'17.06.~12.	유상증자, 채권단 출자전환		2.17
'23.05.~06.	유상증자		1.07
'23.11.28.	유상증자		0.76
'24.7.25.	유상증자		

(자료: 금융위원회)

□ 매년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오션 주식과 관련하여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의 재고자산매각대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을 제외하고는 수입 실적이 없는 상태임.

54)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던 기금으로서 부채 상환을 완료하고 2013년 2월에 청산됨.

< 재고자산매각대 수입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기준	2025년 (안)
계획액	44,117	28,256	30,085	22,749	28,295	18,028	30,099	18,908
수납액	-	-	-	-	-	534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3년도에는 유상증자 시에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여 5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지만, 주식 매각은 2013년 11월 이후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25년도 기금계획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에 보유주식 약 233만주 중 68%에 해당하는 159만주를 매각하고 그 나머지 74만주는 2025년도에 매각한다는 계획인데, 2024년 10월 현재까지 한화오션 주식의 매각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음.

연 도	금 액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계획	30,099백만원	○ 산출내역 : (주)한화오션 주식 1,586,737주를 매각 $- 1,586,737\text{주}^{주1)} \times 18,969\text{원}^{주2)} = 30,099\text{백만원}$ 주1) '23년 말 예상 보유 주식 수의 68% 주2) '22년 4/4분기('22.10.1~'22.12.31까지)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2025계획안	18,908백만원	○ 산출내역 : 한화오션 주식 738,840주 매각 $- 738,840\text{주}^{주1)} \times 25,591\text{원}^{주2)} = 18,908\text{백만원}$ 주1) '24년말 매각 계획 이후 예상 잔여 주식수 주2) '23년 4분기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매년 한화오션 주식 매각을 전제로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을 계상하고 있는데,

- 기금 수입액에 맞추어 지출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재고 자산매각대 미수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등도 계획액 보다 적게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면밀한 주식 매각계획 수립 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을 계상하고, 향후 한화오션 주식의 거래가격 및 향후 변동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회수 자금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 매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V.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재고자산매각대⁵⁵⁾: 보유주식 매각 및 매각 가치 극대화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재고자산매각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융회사의 주식 매각 수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078억원 4,200만원(△49.2%) 감소한 5,253억 3,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재고자산매각대수입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재고자산매각대	80,000	1,033,172	1,033,172	525,330	△507,842	△49.2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에 공적자금 110.9조원을 지원하고 2023년 말 기준 62.7조원을 회수하였으며, 미회수액은 48.2조원임.
- 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방식 지원의 경우 파산채권 또는 대출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공적자금지원(2002년 이전) 후 장시간이 경과했으므로⁵⁶⁾, 향후 추가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5) 세부사업: 재고자산매각대(73-731)

56) 상환기금은 금융회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발생한 2002년 12월까지의 예금보험기금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여 설치된 것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단위: 억원, %)

지원방식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97~'23)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미회수율
출자	507,937	324,330	183,607	36.1
출연	186,117	35,436	150,681	80.9
예금대지급	303,124	173,131	129,993	42.9
대출	5,969	6,005	-	-
자산매입	105,799	87,912	17,887	16.9
합 계	1,108,946	626,814	482,168	43.5

(자료: 「공적자금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보고(금융위원회, 2024.3.)」 재구성)

- 반면, 출자방식의 공적자금지원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향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가격에 매각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한데, 2024년 8월 기준 상환기금 보유 주식은 한화생명 지분 10%, 서울보증보험 지분 93.85% 등임.

< 출자방식 자금지원·회수 실적 및 보유 주식 현황 >

구분	지원 및 회수			보유 주식 현황 및 평가	
	지원액	회수액 (~2023.12.)	회수액 (~2024.8.)	보유주식	평가액
은행	222,039	237,417	238,794 ⁵⁷⁾	수협(국채로 상환 ⁵⁸⁾)	6,774 ^{주1)}
금융투자	99,769	12,121	12,121	-	-
생명보험	56,697	25,345	25,476	한화생명지분 10%	2,580 ^{주2)}
손해보험	102,501	46,137	48,092	서울보증보험 지분 93.85%	29,914 ^{주3)}
종금	26,931	3,309	3,358	-	-
저축은행	1	-	-	-	-
합 계	507,938	324,329	327,841		39,268

(자료: 예금보험공사)

주1) 수협중앙회로부터 수령한 국채의 연도별 회수 금액 총합계('24~'27년)

주2) 한화생명 보유주식을 '24.8월말 시가 기준으로 평가

주3) 서울보증보험 보유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으로서 '23년 IPO 추진시 증권신고서상 공모희망가액 밴드 중간값을 적용

57) 상환기금은 2024년에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24%(936만주)를 전량 매각하여 1,366억원 회수함.

58) 수협은 2022년 9월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하여 잔여가액을 국채로 지급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국채 만기 도래 시마다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음.

2) 검토의견: 보유주식 매각 및 매각가치 극대화 필요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상환기금 보유지분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한화생명보험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유주식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2025년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계획안은 5,253억 3,000만원인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수협중앙회로부터 수령한 국채의 2025년 만기 도래분 800억원 외에 한화생명보험 지분 5%, 서울보증보험 지분 10%에 대한 매각 계획이 있음.

< 재고자산매각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정근거
한화생명보험	126,594	43,428,501주 ^① × 2,915원 ^② ① '25년 매각예상 수량(5%) ② 최근 12개월('23.4월~'24.3월) 거래량가중평균 주가
서울보증보험	318,736	6,982,160주 ^① × 45,650원 ^② ① '25년 매각예상 수량(10%) ② 서울보증보험 증권신고서 공모희망가액 39,500원~51,800원 중간값
수협중앙회	80,000	'25년 국채 만기 도래 액면가 ※ '22.6월 개정 상환합의서에 따라 공사가 수령한 국채의 연도별 만기가액
합계	525,330	

(자료: 예금보험공사)

- 상환기금은 현재 한화생명보험 주식 약 8,686만주, 서울보증보험 주식 약 6,553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은 각각 10%, 93.85%임.

< 상환기금 보유주식 현황 >

(단위: 억원, 2024.9.기준)

구 분	공적자금('97~'23)			보유 주식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주식 수	지분율
한화생명보험	35,500	25,071	10,429	86,857,001주	10%
서울보증보험	102,500	46,136	56,364	65,528,906주	93.85%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생명보험에 대하여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지분 매각 등을 통해 2023년까지 2조 5,071억원을 회수했지만, 2017년 이후 남아있는 지분 10%에 대한 매각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후 배당수입만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임.

-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미회수금액은 1조 429억원인데, 현재 1주당 가치가 2,900원 수준이므로, 보유지분 전량(8,686만주)을 매각한다고 가정하여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략 2,520억원 정도만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공적자금 10조 2,5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2011년 우선주 상환 이후 더이상의 주식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분 93.85%에 대한 배당수입만 있는 상태로서, 2023년 말까지 4조 6,136억원을 회수한데 그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10월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⁵⁹⁾를

59) “기업공개”란 비상장기업이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에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위해,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소에 상장신청 → 심사 및 승인 → 증권신고서 작성 →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 공모가 결정 → 공모주 청약 →

통한 상장 추진 실패 후, 2024년 8월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로드맵(2024.3.)⁶⁰⁾에 따라 소수지분(10% 내외)에 대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였고 2025년 상반기에 상장 추진 예정임.

- 또한, 상장 이후에 시장상황, 기업실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소수지분 및 경영권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할 예정임.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

방식	IPO(기업공개)	소수지분 추가 매각	경영권 지분 매각
시기	'25년 상반기 이내	상환 완료 이후~상환기금 청산시점(27년말) 이내	향후 검토
물량	10% 이상 (시장상황 및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최대 33.85% (단,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50%+1주 이상

(자료: 예금보험공사)

- ☐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생명보험과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향후 시장동향, 보험업 전망, 기업실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여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힘.
- ☐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 청산 예정이며, 그 청산 이전에도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켜 공적자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⁶¹⁾ 원활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상장 순서를 거침.

60)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제224차 회의(2024.3.18.)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 수정(안)」

61)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서는 보유자산의 매각과 함께 매각 가치를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여 상환기금 보유 지분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한화생명보험 잔여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유 주식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2. 기타민간이자수입⁶²⁾: KR&C에 대한 대출금 회수 노력 제고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타민간이자수입”은 KR&C(舊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대출금 이자 수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05억 3,100만원(△21.8%) 감소한 378억 2,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타민간이자수입	36,442	48,351	48,351	37,820	△10,531	△21.8

(자료: 예금보험공사)

- KR&C는 「예금자보호법」⁶³⁾에 따라 예금 대지급, 부실금융회사 자산 인수, 대출 채권 회수 등 부실금융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1999년 12월에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서 상환기금의 자회사임.

- KR&C의 영업기간은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이나 동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영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현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영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임.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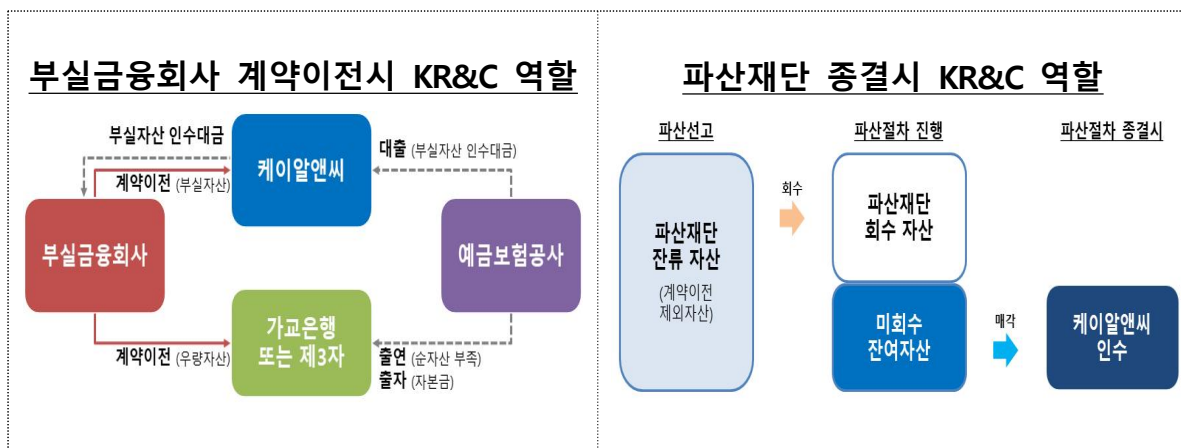
62) 세부사업: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63)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 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36조의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정리금융회사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그 밖에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의7(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①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KR&C는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 수행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비상근이사 3명, 감사 1명)이며 실제 KR&C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인수한 자산의 매각업무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대행하고 있음.
- KR&C는 과거 부실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05년에는 예금보험기금 자산 인수 업무를 추가하였고, 현재는 파산재단 종결 시 잔여자산 인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2) 검토의견: KR&C에 대한 대출금 회수 노력 제고 필요

KR&C는 누적결손으로 인해 상환기금 대출금에 대해 매년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상환기금의 청산일이 2027년 12월이므로, 예금보험공사는 KR&C에 대한 대출금 회수 노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64) 금융위원회는 3년 단위로 영업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음.

- 상환기금은 부실금융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부실자산을 KR&C가 인수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형태로 KR&C에 지원하였는데, 그 대출 총액은 32.6조원임.⁶⁵⁾
- KR&C는 파산배당금, 인수대출채권 회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18.3조원을 상환하였지만, 2024년 9월말 기준 15.4조원(원금 14.3조원, 미수이자 1.1조원)을 미상환한 상태임.

< KR&C에 대한 대출액 및 회수액 현황 >

(2024.9.기준)

KR&C에 대한 대출액	회수액	미회수액
32.6조원	18.3조원	원금 14.3조원 미수이자 1.1조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KR&C는 누적결손(2024년 6월말 기준 약 △18조원) 상태로 추가적인 원금 상환이 어려워, 매년 상환기금에 대하여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 2015년도부터의 상환기금 이자수입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매년 계획액 대비 초과징수가 이루어지다 2021년도부터는 기금 계획액 만큼만 징수되고 있음.

65) 상환기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운용을 개시했는데,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부칙 제9조에 따라 2002년 말까지의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를 상환기금이 포괄승계하였음.

- 이는 2020년도까지는 자산 매각 및 파산배당금 수입 등의 회수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회수액을 상환기금에 납부하였지만, 이후 회수액 규모가 감소하자, 2021년도부터는 종전 상환액을 기준으로 계획액을 편성하고 이 계획액에 맞추어 이자를 징수하였기 때문임.

< 상환기금의 KR&C 관련 이자수입 징수 현황 >

연도	계획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
2015	36,704	183,057	183,057	498.7	100.0
2016	56,288	60,000	60,000	106.6	100.0
2017	51,121	76,000	76,000	148.7	100.0
2018	29,558	103,500	103,500	350.2	100.0
2019	33,513	33,000	33,000	98.5	100.0
2020	15,912	41,413	41,413	260.3	100.0
2021	47,550	47,550	47,550	100.0	100.0
2022	39,564	39,565	39,565	100.0	100.0
2023	36,442	36,442	36,442	100.0	100.0
2024	48,351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5년도 KR&C 관련 이자수입 계획안은 378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3개년 평균 상환액에 평균증감률을 곱하여 산정한 것임.

2025년도 계획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378억 2,000만원	■과거 3개년('21~'23년) 평균 상환액(41,186백만원) × (1+ 과거 3개년 평균 증감율(△4.17%))² (상환액 : ('21) 476억원, ('22) 396억원, ('23) 364억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 KR&C에 대한 대출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부실금융회사를 대신 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예금 대지급은 이미 발생한 부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KR&C의 미상환액(원금 14.3조원, 미수이자 1.1조원) 중 상당 부분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상환기금의 청산일이 2027년 12월이므로, 종전과 같이 평균 상환액을 기준으로 이자수입만을 기금계획안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KR&C의 자산현황을 파악하여 대출금 회수 노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연차별로 현실적인 회수 가능금액을 기금계획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2023년도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에서 KR&C 관련 회수가능 자산을 2022년 말 기준 4,936억원으로 평가하였고,⁶⁶⁾

< 2023년도 정기재계산에 따른 KR&C 관련 회수가능 자산 >

(단위: 억원, 2022.12.기준)

자산총계(A)	부채총계 ⁶⁷⁾ (B)	자본 총계(A-B)
5,487	551	4,936

- KR&C의 2023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1,955억원이며⁶⁸⁾, 매년 약 400억원 수준의 현금성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66)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연구용역(금융분야)」, 2023.10., 예금보험공사(한국금융연구원)

67) 상환기금에 대한 부채는 제외

68) 상환기금 관련 현금성자산(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

<'19년~'23년 KR&C의 현금성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보유대출 관련 수익	277	169	240	190	308
이자수익(예치금 및 보유대출 등)	109	87	73	94	124
임대료수익	68	72	64	65	66
기타수익(유가증권 배당수익 등)	11	20	22	28	18
수익 계	465	348	399	377	516

(자료 : 예금보험공사)

- 한편, KR&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수매도가능증권과 인수대출채권 등은 시장성이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현금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환기금 운용 종료시점(2027.12.)까지 미매각 현물자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2023년 말 기준 KR&C의 매도가능증권 및 대출채권 금액>

인수매도가능증권	인수대출채권
427.5억원 (순자산가치)	56.3억원 (장부금액)

(자료 : 예금보험공사)

-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 청산 일정을 고려해, KR&C 보유 자산의 매각계획 및 현물자산 처리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대출금 회수 노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연차별 회수 가능금액을 기금 계획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VI.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저축장려금⁶⁹⁾: 사업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저축장려금”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 시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17억 2,000만원(△19.0%) 감소한 500억 8,6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저축장려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저축장려금	54,135	61,806	61,806	50,086	△11,720	19.0

(자료: 금융위원회)

- 2023년 말 기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총계좌수는 약 22만계좌이며, 불입액은 1조 2,869억원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 >

(단위 : 계좌,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가입 계좌수(누적)	276,621	267,416	253,570	234,776	221,934
불입액(누적)	10,319	11,588	12,949	13,196	12,869

(자료: 금융위원회)

69) 세부사업: 저축장려금(1631-301)

2) 검토의견: 사업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려금리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3년·5년 만기의 정기적금 형태로서, 가입한도는 연 240만원임.

○ 저축 가입자는 만기도래 시에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2024.1. 기준, 연 4.04%) 외에 가입대상 및 저축기간에 따른 저축장려금(연 0.9% ~ 4.8%)을 추가로 지급받게 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구 분	일반농어민	저소득농어민
가입대상 (법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24년 기준 월 295,19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24년 기준 월 217,980원 이하)
저축형태	정기적금(3년·5년 만기, 월·분기·반기 적립 방식)	
저축기관 지급금리	연 4.04% (2024년 1월기준)	
저축장려금	계약기간	이자율(%)
		일반 저소득
	3년 만기	연 0.9 연 3.0
	5년 만기	연 1.5 연 4.8
	* 저축기간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장려금재원	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	
가입한도	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	
취급기관	단위농협·수협, 산림조합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저축장려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나타냄.

< 저축장려금 지급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저축장려금 지급액	1006	831	829	717	659	682	543	511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신규가입 계좌 수 역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연도별 신규가입 대비 중도해지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규가입 및 중도해지 현황 >

(단위 : 계좌,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규가입 계좌수(A)	70,830	56,110	51,968	44,420	45,084
중도해지 계좌수(B)	10,687	8,871	8,204	9,458	10,546
신규가입 대비 중도해지 비율(B/A)	15.0%	15.8%	15.8%	21.3%	23.4%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은 실적 감소는 장려금리의 하향조정⁷⁰⁾과 연 240만원(월 20만원)에 불과한 저축 한도때문인 것으로 보임.

70)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연혁

구 분			'86. 5. ~ '89. 5.	'89. 6. ~ '95. 6.	'95. 6. ~ '17. 2.	'17. 3. ~
저축한도			일반 연 144만원 저소득 연 72만원	일반 연 144만원 저소득 연 72만원	일반 연 144만원 저소득 연 120만원	연 240만원
장려금리	일반	3년	연 4.2%	연 1.5%	연 1.5%	연 0.9%
		5년	연 4.9%	연 2.5%	연 2.5%	연 1.5%
	저소득	3년	연 10.2%	연 6.0%	연 6.0%	연 3.0%
		5년	연 13.9%	연 9.6%	연 9.6%	연 4.8%

(자료: 금융위원회)

□ 특히, 소득구분별 가입실적을 살펴보면, 총가입 계좌 중 일반농어민 가입 비율이 점차 감소(19년 15.2% → 2023년 11.6%)하고 있는데,

〈 소득구분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실적 〉

(단위 : 계좌, %)

구분	'19년말 기준		'20년말 기준		'21년말 기준		'22년말 기준		'23년말 기준	
	계좌 수	비중	계좌 수	비중	계좌 수	비중	계좌 수	비중	계좌 수	비중
일반	42,130	15.2	38,515	14.4	34,511	13.6	29,611	12.6	25,743	11.6
저소득	234,499	84.8	228,901	85.6	219,059	86.4	205,165	87.4	196,191	88.4
합계	276,629	100	267,416	100	253,570	100	234,776	100	221,934	100

(자료: 금융위원회)

- 이는 일반농어민이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경우 장려금리 0.9%와 저축기관 지급금리 4.04%를 합해도 최대 5.13%의 이자를 받는데 그치고, 저축 한도 역시 월 2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보임.

〈 소득구분별 저축장려금 〉

구 분	이자율(%)	
	일반농어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4년 기준 월 295,190원 이하인 농어민	저소득농어민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4년 기준 월 217,980원 이하 농어민
3년 만기	연 0.9	연 3.0
5년 만기	연 1.5	연 4.8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

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⁷¹⁾의
기금 설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만약,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장려금리 및 저축 한도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재산형성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장려금리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산·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수산업·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